



오직 경남교육! 오직 경남학생!

“더불어 성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 인재 육성”

2026학년도 경남 영재교육 기본 계획(안)

2026. 2.



차 례



① 경남 영재교육 비전과 목표	1
② 운영 근거 및 방침	2
③ 2025. 영재교육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7
④ 2026. 영재교육 세부 추진 계획	

I.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I-1. 디자인싱킹 프로젝트학습 캠프 운영	13
I-2. 핵심역량 영재교육 프로그램 보급	15
I-3. 창의적 산출물 나눔 발표회	16
I-4.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17
I-5. 고도 영재 발굴·지원	18

II. 영재교육기관 운영 특성화

II-1.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20
II-2. 단위학교(초,중) 영재학급 운영 지원	23
II-3.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원	26
II-4.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 관리	27
II-5. 영재교육기관 자체평가·컨설팅 및 워크숍 지원	29
II-6. 경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30

III.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III-1. 현장 맞춤형 영재교육 직무연수 추진	34
III-2. 영재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6

III-3. 영재교육 길라잡이 개발·보급	37
III-4. 영재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39
III-5. 영재교육 진흥 유공자 표창	40

IV. 잠재력 있는 인재 영재교육 기회 확대

IV-1. 사회적 배려대상자 영재교육 활동 지원	43
IV-2.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44
IV-3. 영재교육 교육기부활동 및 산출물 지도 지원	45
IV-4. 영재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6
IV-5. 영재교육 교육활동 홍보 강화	47

⑤ 2026. 경남 영재교육 운영 예산	48
-----------------------------	----

※ 부록

1. 2026. 초·중·고 영재학급 현황	52
2. 「영재교육진흥법」	54
3.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61
4. 경상남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76
5. 영재교육기관 수당 지급 지침	78
6.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업무 시행 지침	83
7. 영재교육기관 강사(담임) 임용 지침	88
8. 영재교육기관 운영비 정산서	96
9. 영재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97
10. 영재교육기관 자율 감사 점검	98
11. 영재교육기관 연간 일정	99

“더불어 성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 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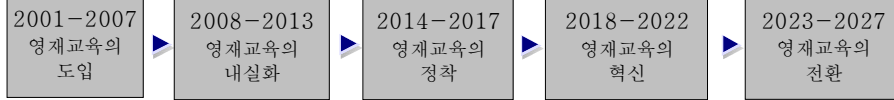
2026학년도 경남 영재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u>학생 맞춤형 영재교육과정 다양화</u> - 교육 영역 다양화: 수학과학, 과학, 수학, 발명, 정보, 문학(논술), 외국어, 융합, 예술(연극, 영상, 음악), 체육, 기타(로봇틱스, 그린생명과학) - (즐거자)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학습, 개인 및 소집단 단위 연구조사 위주로 활동 - (프로젝트학습 지원) 찾아가는 디자인싱킹 창의융합캠프 지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 <u>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 컨설팅의 촘촘한 손길 지원 강화</u> - (나누자) 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대한 컨설팅 추진 - 전문 인력의 영재교육원과 초·중·고 영재학급 컨설팅 지원 - 영재교육원 운영,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단위학교 영재학급: 자체평가 중심 컨설팅으로 영재학급 내실화에 기여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 <u>영재교육 담당교원 단계별·맞춤형 영재교육 특수분야 직무연수</u> - (단계별) 영재교육 기초과정, 심화과정 - (맞춤형) 영재교육 담당 관리자 직무연수, GED 시스템 활용능력 신장 직무연수(온라인 전달연수 포함) ▶ <u>영재교육원·영재학급 운영 영재교육 길라잡이 개발 및 보급</u> - (나누자) (영재교육기관별) 공문, 계획 서식 등에 대한 표준안 제시 ▶ <u>초·중·고 영재학급으로 찾아가는 디자인싱킹 창의융합캠프로 우수 영재수업 모델 제시</u> - (즐거자) 「좋은 영재수업」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직무연수를 추진하여 교사들에게 노하우 및 자료를 공유
잠재력 있는 인재 교육기회 확대	▶ 영재교육기관 수시모집 체계 구축 - (누리자) 영재교육기관은 정원 내에서 영재교육대상자 수시모집 ▶ <u>희망하는 모든 이를 위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선교육·후선발)</u> - (누리자) KAIST 사이버영재교육원(11개 학급): 영재교육대상자 100% 지원 가능 경상남도사이버영재교육원(12개 학급): 사이버영재교육원운영

1. 경남 영재교육의 비전과 목표

1. 영재교육 비전과 목표

|비전| 더불어 성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 인재 육성



|목표| 즐기고 누리며 나누는 영재교육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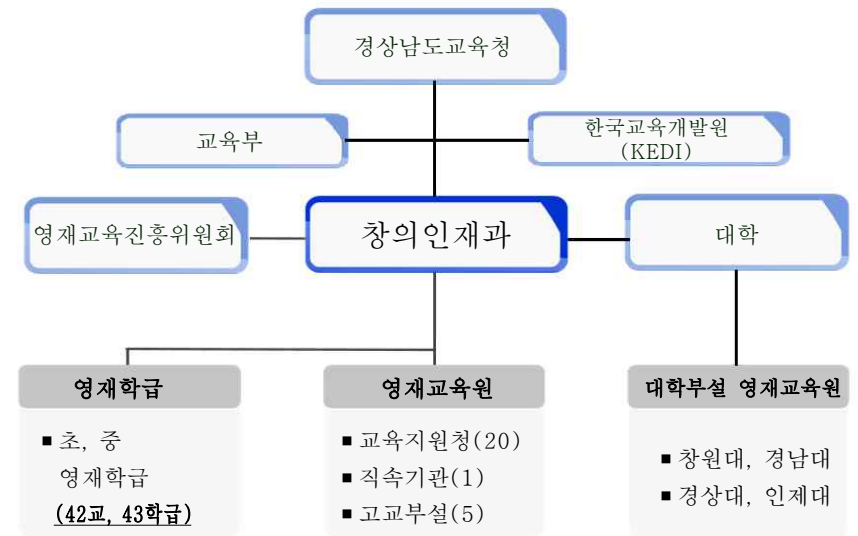
과 제	수요자 맞춤형 교육 · 지원 확대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잠재력 있는 인재 교육 기회 확대
세 부 추진 계획	▶ 찾아가는 디자인씽킹 창의융합캠프 운영 ▶ 영재교육기관별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운영 ▶ 인성 · 리더십 강화 교육기부 활동 확산 ▶ 학교 밖 청소년 등 맞춤형 선발 · 교육 ▶ 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현장적용	▶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 단위학교(초,중,고) 영재학급 운영 지원 ▶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 관리 ▶ 영재교육기관 자체 평가 및 컨설팅 ▶ 경남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 경남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활성화	▶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지원 ▶ 영재교육전문직학습 공동체 자율 운영 ▶ 영재교육 길라잡이 개발 · 보급 ▶ 영재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영재교육 활성화 진흥 유공자 표창 ▶ 우수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확산	▶ 선발방식 다양화·체계화 ▶ 소외 계층 영재교육 활동 지원 ▶ 영재교육프로젝트 운영 ▶ 영재교육 교육기부 활동 지원 ▶ 영재교육 교육활동 홍보 강화 ▶ 영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2. 운영 근거 및 방침

1. 설치 및 운영 근거

- 「헌법」 제31조 ①항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9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3호)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
- 2026년 영재교육 추진 계획(교육부)

2. 조직 체계



3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운영 현황

기 간	내 용
2000.01.28.	영재교육진흥법 공포(법률 제6,215호, 2002.3.1 시행)
2000.10.01.	경상남도 중학생 수학과학 영재교실 시범 운영
2002.03.28.	마산/거제 교육청 초·중학생 수학과학영재교실 시범 운영
2002.05.18.	경상남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조직
2002.10.08.	마산교육청 외 5개 영재교육원 설치 승인
2006.03.01.	14개 영재교육원 및 7교 영재학급 운영
2007.03.01.	19개 영재교육원 및 10교 영재학급 운영
2008.03.01.	23개 영재교육원 및 18교 영재학급 운영
2009.03.01.	23개 영재교육원 및 49교 영재학급 운영
2010.03.01.	23개 영재교육원 및 85교 영재학급 운영
2011.03.01.	23개 영재교육원 및 241교 영재학급 운영
2012.03.01.	23개 영재교육원 및 261교 영재학급 운영
2013.03.01.	24개 영재교육원 및 281교 영재학급 운영
	경상남도융합과학영재교육원 신설(창원과학고, 6학급)
2014.03.01.	25개 영재교육원 및 300교 영재학급 운영
	경상남도기술창업영재교육원 신설(창원기공, 2학급)
2015.03.01.	26개 영재교육원 및 281교 영재학급 운영
	경상남도체육영재교육원 신설(경남체고, 2학급)
2016.03.01.	26개 영재교육원 및 206교 영재학급 운영
	KAIST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영재교육원 증설(10학급) 운영
2017.03.01.	26개 영재교육원(198학급) 및 161교(179학급) 영재학급 운영
	KAIST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영재교육원 증설(15학급) 운영
2018.03.01.	26개 영재교육원(198학급) 및 144교(160학급) 영재학급 운영
2019.03.01.	26개 영재교육원(198학급) 및 125교(137학급) 영재학급 운영
	경상남도교육청영재교육지원센터 신설
2020.03.01.	26개 영재교육원(199학급) 및 113교(128학급) 영재학급 운영
	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연극반 신설(1학급)
2021.03.01.	26개 영재교육원(200학급) 및 98교(110학급) 영재학급 운영
	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과학심화반 폐지(1학급)
	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문학반 신설(1학급)
2022.03.01.	26개 영재교육원(197학급) 및 74교(77학급) 영재학급 운영
	창원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마산) 외 2개(밀양, 경남과학) 중등발명반 폐지(3학급)
2023.03.01.	26개 영재교육원(189학급) 및 63교(65학급) 영재학급 운영
	통영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외 6개(함안, 남해, 산청, 하동, 함진, 거창) 중등발명반 폐지(7학급), 남해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중등수학과학반 폐지
2024.03.01.	26개 영재교육원(171학급) 및 55교(56학급) 영재학급 운영
	고성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외 2개(경남융합, 사천) 중등발명반 폐지(4학급), 사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외 1개(경남과학) 중등정보(과학)반 폐지(2학급)(단위학교 영재학급)경운초, 율하초, 창덕중 수학과학통합반 폐지(3학급)
2025.03.01.	26개 영재교육원(164학급) 및 49교(50학급) 영재학급 운영
	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중등수학과학반 폐지(1학급), 밀양, 김해, 거창중등과학반 폐지(3학급), 밀양 중등수학 폐지(1학급), 거제 중등발명 폐지(1학급), 경남외국어영재교육원 중등영어 3(중국어) 폐지(1학급), 총 7학급 폐지(단위학교 영재학급)무학초, 안골포초, 가림초, 용남초, 계동초, 안골포중 폐지(6학급)
2026.03.01.	26개 영재교육원(162학급) 및 41교(42학급) 영재학급 운영
	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중등수학 폐지 창원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중등창의발명반 폐지(심의예정), 총2학급폐지 (단위학교 영재학급) 동포초, 진영대창초, 호계초, 신월중, 해운중, 안청초, 삼계초, 미리벌초(심의예정)

4 2026. 전국 영재교육 추진 방향 및 과제(교육부)

비전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추진
중점

- 고도영재 등 영재성에 따른 맞춤형 선발·교육 (과제: ①-1, ②-1, ②-2)
- 숨은 인재 성장·지원 체제 구축 (과제: ①-1, ①-2, ②-3)
- 디지털 분야 등 영역 확대·내실화 (과제: ②-1, ②-2, ③)
- 체계적 지원 및 성과 관리 (과제: ④ ⑤)

추구하는 인간상

(개인)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개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인재

(공공)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위협에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추진
과제① [선발·발굴]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

- 고도영재 발굴·지원
- 소외계층 맞춤형 선발·지원
- 선발 방식의 다양화·체계화

② [교육·지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미래사회 역량 함양
- 분야별 영재교육 강화
- 일반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

③ [기관·체제]
교육기관 운영의 특성화

-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운영의 내실화·특성화
- 영재학교·과학고 운영의 책무성 및 자율성 강화

④ [교원·강사]
교원의 전문성·역량 강화

- 전문성을 갖춘 교원 양성·배치
- 우수 교원 확보·지원 대책 마련

⑤ [행·재정·환경]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

- 법·제도 개선
-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 조성
- 성과 관리 체계화 및 홍보 확대

5 2026. 경남 영재교육 추진 방향

더불어 성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 **인재** 육성

- [1] 수요자 맞춤형 교육 · 지원 확대
- [2]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 [3]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추진
- [4] 잠재력 있는 인재 교육 · 기회 확대

4대 분야		21개 추진과제
1	수요자 맞춤형 교육 · 지원 확대	1-1 영재 교육 산출물 발표를 통한 성장과 나눔 기회 확대
		1-2 학생 주도형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확산
		1-3 찾아가는 우수 컨텐츠 적용 및 확산
		1-4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맞춤형 영재 교육 지원
		1-5 온 · 오프라인을 통한 전문적 학생 관리
2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2-1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기관 선발 방식의 다양화
		2-2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3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교사관찰추천제 내실화
		2-4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2-5 영재 교육 기관별 눈높이 컨설팅 지원
		2-6 경남 맞춤형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3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3-1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및 내실화
		3-2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전담 환경 조성
		3-4 영재교육 발전에 공헌한 유공 교직원 표창 추진
		3-5 현장 중심 영재 교육 실현, 경남 영재 교육의 질적 성장 지원
4	잠재력 있는 인재 교육 기회 확대	4-1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 교육 대상자 지원 강화
		4-2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 교육 기회 제공
		4-3 꿈키움 프로젝트(최대 10년간 소외계층 학생영재 교육 기회 보장)
		4-4 교육 기부를 통한 영재학생의 나눔 정신 실현
		4-5 영재교육 교육활동 홍보를 통한 영재 교육 마인드 제고

6 운영 방침

- **(영재교육기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초·중·고등학교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한다.
- **(영재교육원장)** 교육감 승인을 받은 영재교육기관장은 소속 기관장(교육장, 학교장, 직속 기관장)이 겸임한다.
-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원 및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신설 및 증설, 영역 변경, 폐지를 할 때는 경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한다.(「영재교육진흥법」 제7조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0조~22조)
- **(영재교육원 강사)** 영재교육원 강사는 급당 4명 임용하며, 영재교육 직무연수 미이수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60시간(출석)이상의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미이수 시 재임용에서 제외), 강사는 학교 급(초·중등)별로 맞게 임용한다.
- **(영재학급 강사)** 단위학교 영재학급 강사는 급당 4명 이상 임용하며, 임용된 강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영재교육 직무연수 미이수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 **(외부강사)** 영재교육 전문가와 더불어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확산한다.
- **(영재 분야)** 영재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학·과학 외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기회를 점차 확대·운영한다.
- **(평가·컨설팅)** 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 자체평가·컨설팅을 시행하여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고, 차기 영재교육 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GED¹⁾ 시스템을 활용한 교사 관찰추천제 전형 방법을 실시하고, 성적 반영 비율 최소화, 소외계층(사배자) 비율을 10% 이상 선발한다.
- **(단위학교 영재학급)**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영재학급은 소속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운영한다.
- **(영재교육 수료)** 영재교육 수료기준은 교육과정 전체 운영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 **(전문적 학습공동체)** 영재교육 교과연구회 및 교사 동아리 조직을 지원하며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 **(영재교육 지원)** 영재교육 지원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영재교육 길라잡이를 개발 보급한다.

1)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ifted Education Database

3. 2025학년도 영재교육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1. 영재교육기관별 운영 결과 (2025.12.)

가. 영재교육기관별 학생 수료 현황

구분	기관수	초		중		전체	
		학급수	인원	학급수	인원	학급수	인원
영재학급(학교수)	49	39	604	11	162	50	766
영재교육원	26	89	1,714	75	1,165	164	2,879
계	75	128	2,318	86	1,327	214	3,645

2. 영재교육원 및 단위학교 영재학급 수료 결과

가. 영재교육원 수료 결과(26개원, 165학급, 2,870명)

순	영재원명	초		중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인원(명)
1	창원	7	139	7	105	14	244
2	마산	7	135	4	68	11	203
3	진해	4	77	2	36	6	113
4	진주	7	136	7	130	14	266
5	통영	4	74	2	37	6	111
6	사천	4	78	2	33	6	111
7	김해	10	184	7	100	17	284
8	밀양	5	74	0	0	5	74
9	거제	6	119	5	82	11	201
10	양산	6	116	5	79	11	195
11	의령	2	23	1	11	3	34
12	함안	3	60	1	20	4	80
13	창녕	2	38	2	37	4	75
14	고성	2	38	1	18	3	56
15	남해	4	77	0	0	4	77
16	하동	2	40	1	19	3	59
17	산청	2	35	1	13	3	48
18	함양	3	49	0	0	3	49
19	거창	4	62	1	11	5	73
20	합천	2	36	1	14	3	50
21	경남사이버	3	59	3	56	6	115
22	경남과학	0	0	9	131	9	131
23	경남외국어	0	0	5	97	5	97
24	경남융합	0	0	4	70	4	70
25	경남기술창업	0	0	2	31	2	31
26	경남체육	0	0	2	32	2	32
계		89	1,649	75	1,230	164	2,879

나. 단위학교 영재학급 수료 결과

순	지역	학교명	학급수	정원	수료자	순	지역	학교명	학급수	정원	수료자
1	거제	대우초등학교	1	20	16	39	거제	거제중학교	1	20	19
2	거제	제산초등학교	1	20	15	40	거제	거제고원중학교	1	20	15
2	거제	제산초등학교	1	20	9	41	거제	계룡중학교	1	20	17
3	고성	고성초등학교	1	20	15	42	양산	개운중학교	1	20	11
4	김해	관동초등학교	1	20	11	43	진주	대아중학교	1	20	20
5	김해	김해구지초등학교	1	20	13	44	창원	성지여자중학교	1	20	15
6	김해	김해대곡초등학교	1	20	10	45	창원	진해남중학교	1	20	20
7	김해	김해동광초등학교	1	20	19	46	창원	창원중학교	1	20	19
8	김해	삼계초등학교	1	20	15	47	창원	해운중학교	1	20	14
9	김해	수남초등학교	1	20	20	48	창원	남산중학교	1	20	12
10	김해	진영금병초등학교	1	20	15	49	창원	신원중학교	1	20	0
11	김해	진영대창초등학교	1	20	9	합계			11	220	162
12	남해	남해초등학교	1	20	17						
13	밀양	미리벌초등학교	1	20	16						
14	사천	동성초등학교	1	20	20						
15	사천	문선초등학교	1	20	20						
16	사천	사남초등학교	1	20	20						
17	사천	용산초등학교	1	20	15						
18	양산	대운초등학교	1	20	18						
19	양산	백동초등학교	1	20	15						
20	양산	삼성초등학교	1	20	10						
21	양산	중부초등학교	1	20	11						
22	양산	황산초등학교	1	20	19						
23	진주	남강초등학교	1	20	15						
24	창녕	동포초등학교	1	20	12						
25	창원	가고파초등학교	1	20	20						
26	창원	해운초등학교	1	20	18						
27	창원	호계초등학교	1	20	9						
28	창원	안청초등학교	1	20	20						
29	창원	남정초등학교	1	20	15						
30	창원	반송초등학교	1	20	12						
31	창원	삼정초등학교	1	20	20						
32	창원	신방초등학교	1	20	13						
33	창원	용호초등학교	1	20	19						
34	창원	용남초등학교	1	20	10						
35	창원	평산초등학교	1	20	16						
36	통영	진남초등학교	1	20	18						
37	통영	통영초등학교	1	20	19						
38	합안	호암초등학교	1	20	20						
합계			39	780	604						

다.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기관명	학급수			인원
	초등	중등	계	
경상남도교육청사이버영재교육원	3/59	3/56	6/115	115/120
KAIST 경상남도교육청사이버영재교육원	8/171	4/81	12/252	252/240
합계	11	7	18	367/360

라. 영재학급 폐지 현황(2026. 3. 1.)

구분	초등	중등	계
영재교육원	0	2원 2학급	2원 2학급
단위학교	4교 4학급	2교 2학급	5교 5학급

(영재교육원 / 2학급 폐지)

진주교육지원청 중등창의발명 폐지(1학급)

창원교육지원청 중등수학 폐지(1학급), 심의예정

(단위학교 영재학급 / 7학급 폐지)

(초등) 동포초, 진영대창초, 호계초, (중등) 신월중, 해운중

안청초, 삼계초, 미리벌초(심의예정) / 41교 42학급 운영

3 2025. 주요 사업 추진 실적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대상
(과제1)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디자인싱킹 창의융합캠프	○ (1단계)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개발 ○ (2단계) 영재학급으로 찾아가는 창의융합캠프 실시 ※ 학교단위 영재학급 「좋은 영재수업」의 롤모델 제시	4.~12	초,중,고 영재학급
역량중심영재교육 프로그램 보급	○ AI 활용 프로젝트 학습 자료 개발 보급(온·오프라인)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 자료 개발 보급(온·오프라인)	8.~12.	영재교육원 초,중,고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단위학교영재학급 컨설팅	○ 단위학교 영재학급 대면 컨설팅 ○ 영재교육원 자체평가 및 3개 그룹별 대면 컨설팅 실시	3.~4.	영재교육원 초,중,고 영재학급
2026. 영재교육 교육과정 계획 수립 지원	○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에 의거 2026. 영재교육과정 검토 및 2026. 교육과정 연간지도계획 수립	12	영재교육원 강사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대상
(과제2)	영재교육기관 교육역량 강화		
초·중·고 영재학급 재승인 업무 간소화	○ 초·중·고 영재학급 재승인 업무 간소화 - 영재교육 업무 간소화를 위해 2026. 승인 절차 안내 ○ 초·중·고 영재학급 중 희망학교만 2026. 컨설팅 실시	연중	초,중,고 영재학급 운영 학교
영재교육 길라잡이 개발 및 보급	○ 영재교육기관 운영 시 수반되는 각종 공문, 계획 등에 대한 표준안 제시된 영재교육 길라잡이 개발보급으로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 ○ 영재교육 입학식부터 수료식, 영재학급 선발, 운영, 재승인 절차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Step by Step 매뉴얼(연간 일정표) 개발 및 보급	연중	영재교육원 초,중,고 영재학급 담당, 강사, 관리자
GED 활용 영재교육 관리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는 GED의 영재성 발달기록 운영으로 온라인 통합 관리 ○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활용능력 신장 온라인 직무연수 900여명 이수	연중	교원
영재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경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 ⇔ 영재교육기관 컨설팅 지원단 ⇔ 교육지원청 담당 ⇔ 영재교육 전문가 ⇔ 한국교육개발원 ⇔ 경남대, 경상대 등 ⇔ 학부모 ⇔ KAIST	연중	교원 전문직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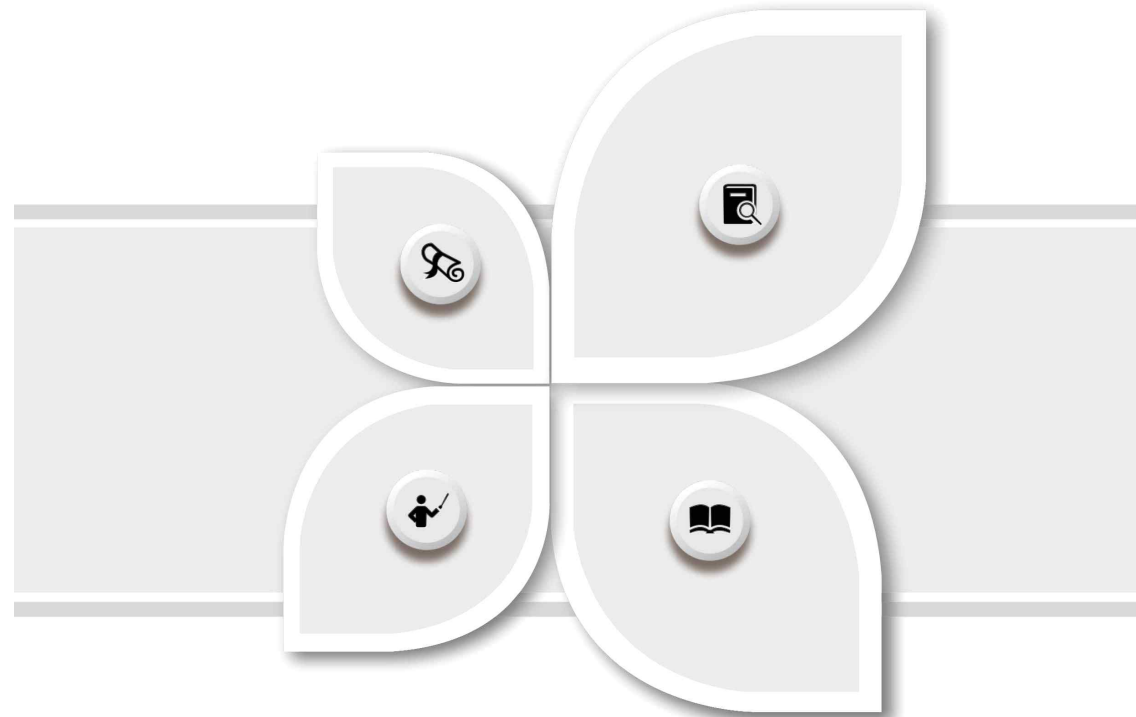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대상
(과제3)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경남 맞춤형 영재교육 특수분야 직무연수	- 영재교육 특수분야 8과정 연수 1,200여명 이수 - GED 시스템활용능력 신장 온라인 직무연수(15시간, 900명) (10월) 미래교육역량강화 연수(30시간 이상, 294여명)	2.~12.	영재교육 담당, 강사, 관리자
영재교육 단계별 직무연수 운영	-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운영: 5과정, 250여명 이수 - 영재교육 기초·심화 연수	1.~12.	영재교육 담당, 강사, 관리자
영재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경남영재교육연구회 영재키움 프로젝트 85명 학생 지원	4.~12.	교원 학생 학부모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대상
(과제4)	재능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대상자 영재교육 기회 확대	선교육·후선발 KAIST 사이버영재교육원	연중	교원 학생
창의적산출물 성과 나눔 발표회	영재교육원별 산출물 대회를 폐지하고, 영재교육원별 자체 계획에 의한 성과 나눔 산출물 발표를 통해 정보 공유와 나눔의 시간을 가짐	5.~11.	학생 학부모 교원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 영재학급 운영비 지원: 교육기부활동	연중	학생 학부모 교원
영재키움 프로젝트	- 지원 대상: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2항²⁾ 및 시·도별 자체 기준 등에 의거, 영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0년을 지원(초3 ~ 고3) - KAIST 과학영재교육원: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학생 85명), SW·AI 전문가 멘토링 데이 운영(학생 60명, 멘토 교사 26명)	연중	교원 학생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2항: 교육급여 수급자,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특수교육 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I.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I-1. 찾아가는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캠프 운영 / 13

I-2. 핵심역량 영재교육 프로그램 보급 / 14

I-3. 창의적 산출물 나눔 발표회 / 15

I-4.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 16

I-5. 고도 영재 발굴·지원 / 17

I-1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캠프 운영

1 사업 목적

- 프로젝트 학습 중심(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 영재수업* 디자인으로 영재학급 수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의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 참여형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이란?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활동이며 문제 해결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에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미래 문제 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전문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삶에서 생기는 문제 상황을 여러 가지 공감 방법을 통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감을 통해 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 평가, 선정,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추진 일정

- 일시: 2026. 4. ~ 11.
- 대상
- (1순위) 단위학교 영재학급 (2순위) 영재교육원

3 주요 내용

- 대상별(초, 중), 영역별(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발명, 국어, 정보)의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 영재교육 프로그램 활용
-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사고 확장성이 성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은 '톡톡클래스' 자료실에 탑재 정보 공유
- 캠프 참여 수업시수는 영재학급 동일 분야일 때 교과 시수로 인정, 그 외 비교과 시수로 포함
- 영재수업 중 영재학급 담당 강사는 학생 성장 중심의 관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모든 영재 강사가 캠프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 흐름도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수업 흐름도



I-2 학생 주도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현장적용

1 사업 목적

-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는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과 인공지능(AI) 연계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역량 중심 영재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한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2 추진 방침

- 일시 : 2026. 3. 1. ~ 12. 31.
- 대상
 - 20개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및 경상남도사이버영재교육원
 - 5개 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 45개 초, 중 단위학교 영재학급

3 주요 내용

-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의 대주제*를 토대로 역량 중심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대주제(Big idea)란?

분과적인 중요 개념보다 상위 개념으로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고차원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활용(예: 상호작용, 안정성, 변화, 관계 등)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과 인공지능(AI) 연계 프로그램 적용
 -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AI 활용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활용
 - 미래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I-3 창의적 산출물 나눔 발표회

1 사업 목적

-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도교육청 주관 산출물 발표대회 폐지
- 프로젝트(산출물) 수업을 통한 영재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질 향상
- 교사는 각 분야별 산출물 지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생은 자신의 잠재된 끼를 발휘하여 지역사회 교육기부 실천

2 추진 방침

- (핵심역량 교육 강화) 문제해결력, 창의력, 소통 및 협업 능력 등 일반 핵심역량과 수학적 추론, 과학적 탐구력 등 영재 분야별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강화방안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영재 교수·학습 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치 인식을 위한 문제의 본질 파악	가치 발견을 위한 창조적 대안 생성	가치 창출을 위한 실용적 대안 개발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적 대안 실행

- (인성·리더십 교육 강화) 영재들이 공감, 사회적 책임 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성·리더십 교육에 대한 편성 기준(예: 10% 이상) 마련 및 적용

실제사례 ① 영재교육 이수 기준에 봉사 활동 포함 사례

- (경남 안청초 영재학급) 찾아오는 교육기부활동 운영, 영재학급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전교생이 다양한 창의 활동을 체험하는 교육기부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가르치며 배우는' 선순환을 통해 나눔의 학교 문화 조성

- 영재교육기관별 자체 창의적 산출물 나눔 발표회 실시
- 발표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창의적으로 발표(산출물 발표대회 참가 내용, 연극·영화반 발표, 악기 연주, 시 낭송, 공연, 학생 산출물 지도 방법 등)
- 발명반 실적 전시회를 겸하여 실시함

3 행사 개요

- 행사 일시 : 2026. 11. ~ 12. (예정) ※일정준수
- 행사 장소 : 각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지정 장소
- 각 영재교육기관별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나눔 발표회 실시

4 예산 내역 : 영재교육원별 자체 예산 편성

I-4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1 사업 목적

- 학습의 다양화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영재교육의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대상자 발굴로 영재교육 사각지대 해소

2 추진 방침

- 일시 : 2026. 3. 1. ~ 12. 31.
- 대상 : 학교 밖 재능 있는 청소년

3 주요 내용

- 학교 밖 재능 있는 청소년이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근거로 영재교육원 지원
- 소속 학교장, 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지원하는 영재교육원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출
- (추진 내용 및 일정)

순	추진 내용	일정	비고
1	영재교육원의 장이 정하는 서류 선정 예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미인가 교육시설 장의 추천서 등	7월	영재교육원
2	자료 제출 요청	8월	영재교육원
3	영재교육원에 지원서 작성	9월	학교 밖 청소년 해당자
4	창의적문제해결력 검사 등 영재선발 전형 응시	12월	학교 밖 청소년 해당자
5	영재교육 대상자 합격자 발표	12월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 선발 대상자의 다양화를 통해 영재교육 선발의 유연성 확보
-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의 영재교육 수요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4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I-5 고도영재(영재교육특례자) 발굴·지원

1 사업 목적

- 고도영재 학생에게 적합한 영재교육기관 배치 및 교육·지원 체계 마련
-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인지, 사회, 정서 역량의 균형적 발달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2 추진 방침

- 일시 : 2026. 3. 1. ~ 12. 31.
- 대상 :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영재교육기관 또는 소속 학교 교육 외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고도영재(영재교육특례자) 정의

제2조(정의)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 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 내용

- 고도영재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영재학교 조기입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고도영재 선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마련 후 추가 정책에 따라 차후 보완
- 추진 내용 및 일정

순	추진 내용	일정	비고
1	학생·학부모 신청	상시	해당자
2	소속 영재교육기관 또는 학교장 추천	상시	해당기관
3	자료 제출 요청 - 신청 학생 특성에 따라 영재교육 담당부서에서 요청할 자료 (지능형검사, 창의성검사, 포트폴리오, 우수실적증빙자료 등을 결정함)	상시	교육청
4	영재교육특례자 판별 추천 여부 심사	상시	영재담당장학사 협의
5	영재교육특례자 판별 추천 및 선정 의뢰	상시	교육청
6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상시	한국교육개발원
7	선정심사 결과 교육청으로 통보	상시	한국교육개발원

-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발굴지원 사례가 없던 고도영재(영재교육특례자)에 대한 지원 체계 형성

4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4 2026학년도 영재교육 세부 추진 계획



II. 영재교육기관 운영 특성화



- II-1.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 20
- II-2. 단위학교(초,중,고) 영재학급 운영 지원 / 23
- II-3.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원 / 26
- II-4.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 관리 / 27
- II-5. 영재교육기관 평가컨설팅 및 워크숍 지원 / 29
- II-6. 경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 30

II-1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1 사업 목적

-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생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심화 영재 교육을 통한 창조적 인재 육성
- 창의·융합 탐구역량 계발을 위한 관심 분야의 집중 학습형 교육 중심으로 운영

2 추진 방침

- 교육지원청(20) 및 직속기관(1), 고등학교 부설(5) 영재교육원 26개 운영
- 교과 수업(출석)은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여 운영
- 체험학습, 캠프 활동, 봉사활동 등 각 영재교육원 자체 계획에 의거 자율 운영
- 영재교육 운영 과정에서의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숙진, 선수학습의 억제 노력
-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시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적용한 교육과정 운영 및 영재교육대상 학생들이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 교육 프로그램 포함 권장
-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적용한 교육과정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보장-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23. 12.)
-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온라인교육 및 전입생 등 특별한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예외 허용
- KAIST 위탁 사이버영재교육원(11개 학급)은 미래교육원(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1학년도부터 운영

3 주요 내용

-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26기관 162학급 3,240명(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제외)

영재교육원	기관수(개)	학급수(개)	학생수(정원)	분야
교육지원청 (18개 교육지원청)	20	134	2,680	수학, 과학, 발명, 정보, 체육, 문학, 예술, 사회, 융합, 외국어
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5	22	440	
직속기관 (미래교육원)	1	6	120	
합계	26	162	3,240	

※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 과학기술부 승인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과학영재교육원)
-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
- 경상남도교육청 승인(인제대 과학영재교육원)

● 운영 시 유의점

- ▶ 영재교육기관 강사(담임) 임용 지침 준수(창의인재과-19840, 2020.10.30.)
- ▶ 영재학급 강사 및 담임 수당 지급 지침 준수(창의인재과-19840, 2020.10.30.)
- ▶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업무 시행 지침 준수(창의인재과-19840, 2020.10.30.)
- ▶ 영재성발달기록부 운영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알림(교육부, 생기부기재요령)
- ▶ 과학실험원(교육공무직) 인력 운용 지침 준수(창의인재과-16930, 2017.12.8.)
근무시간 내 수당 지급 불가, 과학실험원 영재교육 관련 부서 배치 확인
교무행정실무원은 영재수업 지원 불가
- ▶ 영재교육원 운영비 집행 후 운영비 정산서 제출(공문 안내 및 제출, 필수)
- ▶ 영재교육원 수료식은 1월 말 이전 시행
- ▶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편성(102시간 이상) 정상 운영(대면수업 원칙)
- ▶ 2026. 영재학급별 영재교육대상자 등록 인원이 12명 미만일 경우 폐지(필수)
- ▶ 강사 임용 시 학교 급별에 맞게 임용함(창의인재과-7395, 2021.5.11.)
2026학년도 신규 강사 임용 시 영재학급별 학교급(초, 중등)에 맞게 임용(필수)
- ▶ 영재학급 담임 임용 시 기초 및 심화과정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확인 후 모두 이수한 자를 임용함(발명반 제외)
- ▶ 강사는 임용 전 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도교육청 강사임용 지침에 기재된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직무연수 기초과정 또는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자 재임용 제외
- ▶ 영재교육기관 수료 기준은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 원칙
- ▶ 산출물(프로젝트) 발표회
 - 과제연구, 소논문, 동영상 제작 등 주제별 배움 중심 활동 적극 권장
 - 프로젝트 수업 시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
 - 산출물 작성법 지도(집중), 모듈별 산출물 지도 등 다양한 지도 권장
 - 발표회 시기는 교육과정 종료 후 성과 나눔회 및 수료식과 병행 운영 적극 권장

●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장안)

구분		내용	비고	
총시수		102시간 이상	이수 기준	
교과 (94)	수업(74)	- 74시간 이내 (대면수업 원칙임)	수당 지급 가능	50,000원
	산출물 (20)	- 20시간 이상 포함 ※ 산출물(프로젝트) 지도 중점		30,000원
	계	94시간 이상		
비교 과 (8)	체험활동 (캠프)	- 단순 체험(위탁 운영 등) - (교과수업 인정) 강사가 직접 지도한 캠프 활동 캠프 활동을 고려한 교육과정 계획 → 교과수업 → 캠프 활동 → 평가(산출물) 일체화 ※ 영재분야 내용으로 강사 지도 근거 필요 ※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권장	※ 강사가 직접 지도한 근거가 있는 체험·봉사활동(교과수업 시수 인정) ※ 단순체험·봉사활동(강사 수업 시수 미인정)	- 자율 편성 - 교과 수업 미포함
	봉사활동	- 영재 분야와 관련된 봉사활동(권장), 연 1회 ※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권장		
	상담활동	- 학부모 공개수업(권장), 연 1회 이상 - 학생 및 학부모 상담활동(권장), 연 1회 이상		
	진로활동	- 학생 및 학부모 진로특강(권장), 연 1회 이상 - 진로지도 멘토링(권장), 연 1회 이상		
	행사활동	- 자체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실시 - 입학식, 수료식, 페스티벌 참가 시간 등 ※ 형식적인 활동은 자양하고 스토리가 있는 행사활동 추진		
	계	8시간 이상		
합계		102시간 이상		

4 예산 내역

- 영재교육원 학급당 10,000천원,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급당 4,000천원 지원
- KAIST 사이버 영재교육위(11학급) 운영비 97,900천원 지원
- 미래교육원 사이버영재교육원(6학급) 운영비 71,175천원 지원



II-2 단위학교(초, 중, 고) 영재학급 운영 지원

1 사업 목적

-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생 능력에 맞는 기초 소양 영재교육으로 창조적 인재 육성
- 영재성 발굴 및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영재성 발달과정의 관찰형 교육 중심으로 운영

2 추진 방침

- 교과수업(출석)은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여 운영
- 체험학습, 캠프, 교육기부(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 운영
-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가 확대되도록 선발 계획 수립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GED 시스템을 활용한 관찰추천 선발 추진 권장
- **자기설계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운영 권장**(영재 분야와 연관 지도, 수업시수에 해당)

※ 안청초 예시 (나의 재능 찾기 프로젝트)

학습 계획하기 → 실행하기(체험활동, 연구활동, 영화감상, 과학실험, 전공서적 읽기, 견학, 자기주도학습 등 선택하여 학습) → 교사 멘토링→ 프로젝트 발표하기

3 주요 내용

- 운영 현황 (2026. 3. 1.)

급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정원)
초	36교	37학급	740명
중	8교	8학급	160명
합계	44교	45학급	900명

- 운영 시 유의점

- ▶ 영재교육기관 강사(담임) 임용 지침 예고(창의인재과-19840, 2020.10.30.)
 - 영재학급 급당 4명의 강사 임용, 최소 2년 이상 근무 원칙
 - (업무 담당) **현임교 2년 이상** 근무자 영재교육 유경험자 중 내정, 연속 2회 이상 신규교사, 전입교사 담당자 지정 시 재승인 불가
- ▶ 영재학급 강사 및 담임 수당 지급 지침 준수(창의인재과-19840, 2020.10.30.)
- ▶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업무 시행 지침 준수(창의인재과-19840, 2020.10.30.)
- ▶ 영재교육기관 영재성발달기록부 운영 계획 준수(창의인재과-16333, 2021.12.2.)



- ▶ 과학실험원(교육공무직) 인력 운용 지침 준수(창의인재과-16930, 2017.12.8.)
근무시간 내 수당 지급 불가, 과학실험원 영재교육 관련 부서 배치 확인
교무행정 실무원은 영재수업 지원 불가

- ▶ 단위학교 영재학급 지원금: **학급당 400만원**

- ▶ 영재학급 학교 자체 예산 일정 금액 확보 편성: 최소 350만원 이상 권장

- ▶ 영재학급 운영비 집행 후 **운영비 정산서 제출**(공문 안내 후 제출)

□ 영재학급 운영 후 제출물 □

1. 운영비 정산서(학교 자체 경비와 도지원 경비 구분)
2. 운영 결과보고서
3. 학생 수료 현황

- ▶ 영재교육기관 수료 기준은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 원칙**

- ▶ 영재학급 수료식은 1월 말 이전 시행

- ▶ **2026학년도 영재 학급 교육과정 편성(90시간 이상) 정상 운영(대면수업 원칙)**

- ▶ 산출물(프로젝트)

- 과제연구, 소논문, 동영상 제작 등 주제별 배움 중심 활동 적극 권장
- 프로젝트 수업 시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
- 산출물 작성법 지도(집중), 모듈별 산출물지도 등 다양한 지도 권장
- **발표회** 시기는 교육과정 종료 후 성과 나눔회 및 수료식과 병행 운영 적극 권장

● 단위학교 영재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장안)

구분		내용	비고	
총시수		90시간 이상	이수 기준	
교과 (85)	수업 (73)	- 88시간 이내 (대면수업 원칙임) - (교과수업 인정) 영재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외부강사가 지도한 수업	수당 지급 가능	40,000원 이상
	산출물 (12)	- 12시간 이상 포함 ※ 프로젝트 지도에 중점을 두실 것		30,000원
	계	85시간 이상		
비교과 (5)	체험활동 (캠프)	- 체험활동 ※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권장	- 자율 편성 - 교과 수업 미포함 ※ 영재 분야와 관련 있는 체험·교육 기부(봉사)활동 (교과 수업 시수 인정) ※ 단순 체험·봉사 활동 수업 시수 미인정	
	봉사활동 (기부)	- 영재 분야와 관련된 봉사활동(권장), 연 1회 ※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권장		
	상담활동	- 학부모 공개수업(권장), 연 1회 이상 - 학생 및 학부모 상담활동(권장), 연 1회 이상		
	진로활동	- 학생 및 학부모 진로특강(권장), 연 1회 이상 - 진로지도 멘토링(권장), 연 1회 이상		
	행사활동	- 자체 산출물 발표대회 실시 - 입학식, 수료식, 페스티벌 참가 시간 등 ※ 형식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스토리가 있는 행사활동 추진		
	계	5시간 이상		
합계		90시간 이상		

II-3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원

1 목적

- 교사관찰추천제 선발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종합적 평가'를 통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항 개발, 보급

2 전형 방법 및 대상

- 방법: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 등(종합적 평가* 방식 도입)
*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단계, 심사 항목, 항목별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발 계획 승인 요청
- 대상: 26개 영재교육원(대학교 부설 제외), 단위학교 영재학급
-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추진

3 선발문항 및 전형 일정

- 2026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문항 개발, 보급
 - 영재성 검사 도구,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 도구: 초4 ~ 고1
 - * 영재성 검사: 36종 144문항(창의사고, 수학, 과학, 인문사회, 정보과학, 수과학통합)
 - *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 도구: 15종 45 과제(수학, 과학, 인문사회)

단계	2027학년도 선발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	2027년 3월 시행(예정)
영재성 검사 도구	2026년 12월 시행(예정)	2027년 3월 시행(예정)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 도구	2026년 12월 시행(예정)	2027년 4월 시행(예정)
평가문항 제공	- 영재교육원 제공 - 단위학교 영재학급 제외	- 단위학교 영재학급 제공 - 영재교육원 제외

※ 영재성 검사 전형은 전국 동시에 시행됨(시험 시간 준수)

4 업무 담당자 협의회 개최

- 일시: 2026. 3, 4월 / 11월 예정
-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회의실
- 참석자: 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 업무담당자
- 협의 내용: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전형 일정 협의

5 예산 내역: 14,000천원 (한국교육개발원 분담금)

4 예산 내역

- 영재학급 운영 학교당 5,000천원 지원(49교 50학급)



II-4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 관리

1 목적

- 영재교육 대상자가 이전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 및 DB 구축으로 교육 연계 기반 마련
- 영재교육 대상자의 전국 표준 생활기록부 양식 제공 및 기록물의 보존·기관 간 연계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필요
- GED 활용한 교사관찰추천제, 교수-학습자료 등 DB 구축 교육 연계 기반 마련

2 추진 방침

- 영재교육진흥법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를 근거로 추진
- 학교생활기록부는 GED의 영재성 발달기록 운영으로 온라인 통합 관리
-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추진

3 주요 내용

- 대상: 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
- 추진 시기: 2026. 3. 1. ~ 2027. 2. 28.
- 이용 방법: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https://ged.kedi.re.kr>)에 기관별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용
- 영재성 발달 기록부 기록 정보 내용

	영역	입력 내용	시기	비고
1	인적사항	- 학생 기본 정보(성명/성별) - 학생 연락처(자택주소/휴대폰/자택전화/이메일) - 학생 학적(졸업학교/재학학교)	3월~5월	필수
		- (제외)학부모(보호자)연락처(성명/관계/연락처)		
2	교육이력	- 이수 영재교육기관/학급명, 프로그램 편성표	수시	필수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수시	권장
3	교육활동	- 출결(출석/결석/지각/조퇴)	수시	필수
		- 종합의견(총평)	수료 전	학생 당 연 1회 이상(필수)
4	관찰·발달 기록	- 학생의 관찰·발달 기록사항 강사 당 전 학생 연 1회 이상 기록(필수)	수시	

5	평가	- 연말 학생 종합 평가 결과 기재 (예시) 종합 점수, 종합 등급, 종합 석차 등	수시	학생 당 연 1회 이상(권장)
6	산출물	- 학생별 산출물 등록	수료 전	1회(필수)
7	수상경력	- 학생별 수상경력 기재(영재교육기관 수여 한정)	수시	수상경력 있는 학생만 기재
8	진로희망	- 학생별 진로희망 기재	수시	학생 당 연 1회 이상(권장)

-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GED) 운영 사업
 - 2026년 영재교육 현황 정보 수집 및 통계 제공
 -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 이력 수집
 - 영재교육 종합자료실 운영
 - GED활용 영재 선발 시스템 운영
 - 인프라 확장 및 안정화
- GED 고도화 및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
 - 영재성 발달 기록부 작성 기능 개선
 - 기관 간 학생 영재교육 이력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및 학생 본인의 영재교육 등록 및 수료 정보 확인 기능 제공
 - 교육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운영
 -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자유로운 구성을 통한 학생 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단계에서 영재교육기관 수료 후 종단 연구 추진 검토

4 예산 내역: 43,300천원 (한국교육개발원 분담금)



II-5 영재교육기관 자체평가·컨설팅 지원

1 사업 목적

- 영재교육기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체평가 및 컨설팅으로 영재교육 효율성 제고
- 영재교육 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2 추진 방침

- 자체평가 보고서 평가 후 영재 교육 운영 보완이 필요한 기관, 컨설팅 희망학교 위주로 방문 컨설팅 실시
-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수업 개선 두 분야로 운영
- (초·중 영재학급) 초·중 영재학급 승인과 현장 방문 컨설팅, 도교육청 컨설팅, 권역별 컨설팅으로 다양한 선택 가능

3 추진 계획 및 방법

- 기간: 2026. 1. ~ 2026. 12.
- 대상기관: 26개 영재교육기관, 49개교 단위학교 영재학급
- 평가 방법: 자체평가 보고 및 대면 평가 후 현장 방문 평가(격년제 실시)

4 주요 내용

- 영재교육 길라잡이 발행·보급
- 평가업무 담당자 및 평가위원 연수, 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5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II-6 경상남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1 목적

- 경상남도 영재교육 기본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영재교육 진흥에 기여

2 추진 방침

-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 3, 4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조직
- 영재교육 전문가, 지역 인사, 학부모 및 영재교육 담당교사 등으로 위원 구성
-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 3의 내용을 심의

3 위원회 구성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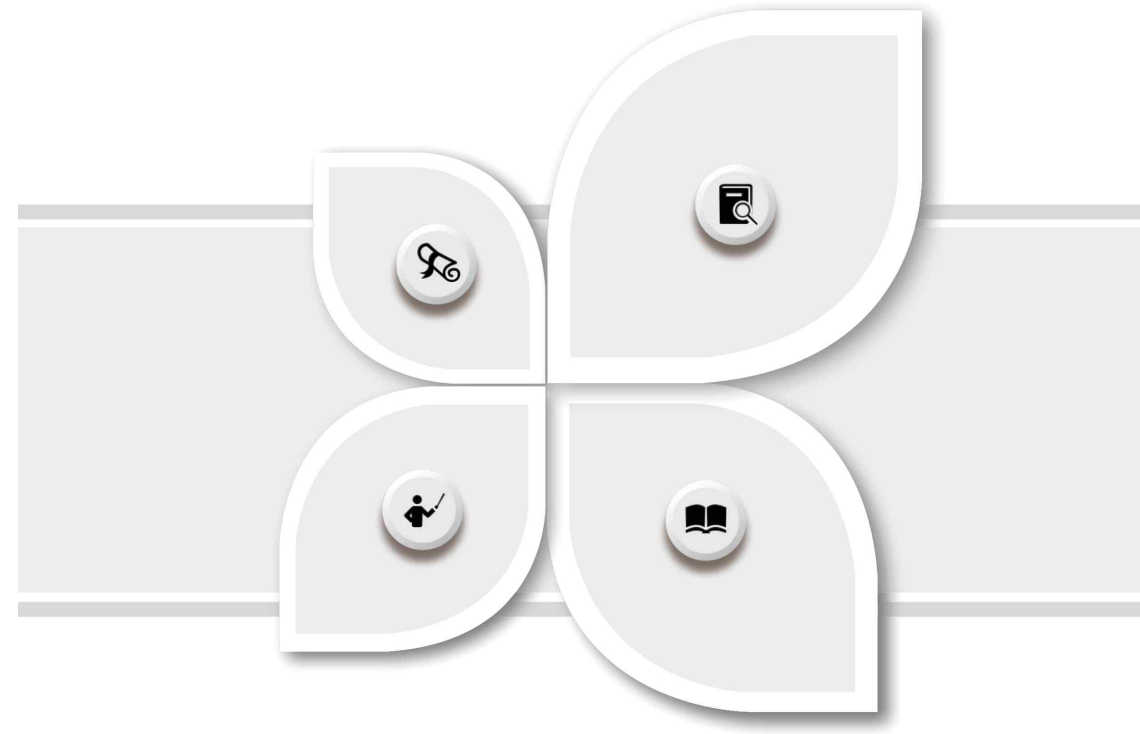
- 구성
 - 근거: 경상남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규정 [개정 창의인재과-11460(2019.8.22.)]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부교육감(당연직)
 - 위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 역할
 - 경남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 공·사립의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 승인 및 승인 취소
 - 교육감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 및 승인 취소
 - 영재 교육에 소요 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당해 영재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26학년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개최: 1월, 10월 예정(연 2회 예정)

4 예산 내역: 900천원

- 위원참석 수당(여비) 및 협의회: 900천원



Ⅲ. 영재교원 담당교원 역량강화



- Ⅲ-1. 현장 맞춤형 영재교육 직무연수 추진 / 34
- Ⅲ-2. 영재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율 운영 / 36
- Ⅲ-3. 영재교육 길라잡이 개발·보급 / 37
- Ⅲ-4. 영재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 39
- Ⅲ-5. 영재교육 진흥 유공자 표창 / 40

III-1 현장 맞춤형 영재교육 직무연수 추진

1 사업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미래지향적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 담당교원의 수업 혁신 역량 제고 등 전문성 강화

2 추진 방침

-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자기 주도적 연수체제 운영
- 영재교육 기본 지식과 수업모형 현장 적용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영재교육 담당 강사 및 강사 예정자를 우선 선발하여 연수 실시
- 관리자 및 영재교육 담당교원(기초 및 심화과정) 연수를 통해 역량강화

3 주요 내용

- **영재교육 직무연수의 방향**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경력별, 단계별, 맞춤형 연수과정[기초연수(61시간), 심화연수(91시간) 전문과정 연수(120시간) 등] 운영
 - 출석연수, 합숙연수, 현장적용연수, 종합연찬회 등 연수방법의 다양화
 -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기간 선택권 확대, 연수기관별 관련 정보 사전 제공, 영재 분야별 연수과정 선택권 확대
- **영재교육 직무연수 특징**
 - 경남 맞춤형 특수분야 직무연수 추진
 - 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적용 연수 4시간 예정
 - 영재교원 전문연수
 -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영재교육과정 구성 실습을 통한 영재교육 컨설팅 전문가 양성
 - 지역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운영
 - 교사 관찰추진을 통한 영재 선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방법 개선 등과 관련한 연수를 지역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개설·운영

4 영재 담당교원 직무연수 추진 일정

순	과정명	대상	연수 기간	시간	인원(명)	연수기관
1	영재교육 담당교원 기초과정	초.중등교원	2026.1.	61	12	경상국립대
2	영재교육 담당교원 심화과정	초.중등교원	2026.1~2026.6.	91	89	경상, 경남대
3	영재교육 담당교원 기초과정	초.중등교원	2026. 8.	61	60	경남대
4	영재교육 프로그램 멘토교사 연수	초.중등교원	2026.7./2026.11.	15	10	KAIST
5	GED의 구성과 시스템활용 방안	초.중등교원	2025.7.	3	900	온라인
6	미래교육 역량중심 영재교육 연수	초.중등교원	2025.5.~7.	30	300	원격연수
	계				1,371	

5 기대효과

- 체계적인 연수체제 구축으로 영재 담당 교원의 수업 혁신 역량 제고 등 전문성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영재교육 실현

6 예산 내역 : 91,500천원

III-2 영재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율 운영

1 사업 목적

-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영재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발전 방안 도출
- 상시 협업과 수업 노하우 공유를 통한 영재 교원 집단 지성 발현의 장 마련

2 영재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율 운영

- 대상: 영재교육기관 담당 교원 또는 전문가 (경남영재교육연구회)
- 운영 기간: 2026. 4. ~ 12.
- 중점 추진 내용
 - (프로그램 개발·적용)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출물* 도출
 - *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활동지 등
 - (현장 연구) 정책 추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영재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예산 지원
-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 중심의 영재교육 현장 적용 활성화 및 확산
- 영재교육 역량중심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 방안 협의
- 학교단위, 지역단위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실화
- 핵심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 소통, 협업, 창의성,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수업 적용 사례 공유
-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성장 사례 공유

※ 영재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란?

영재교육 표준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영재기관별 2명 이상의 교원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3 예산 내역 : 비예산 사업



III-3 영재교육 업무 길라잡이 개발·보급

1 사업 목적

- 영재교육기관 운영 시 수반되는 각종 공문, 계획 등에 대한 표준안 제시로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
- 영재교육기관 운영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

2 추진 방침

- 일시: 2026. 2. ~ 12.
- 대상: 영재교육원, 초, 중 단위학교 영재학급

3 영재교육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 영재교육 행정업무 매뉴얼 개발 TF 조직 및 운영
- 영재교육 입학식부터 수료식, 영재학급 선발, 운영, 재승인 절차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Step by Step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영재교육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고민 해결 및 자원 관리 지원
- 영재교육 길라잡이 구성

영역	내용
I. 영재교육의 이해 및 운영의 기저	1. 영재교육의 이념 및 목적 2. 영재에 대한 이해 3. 경상남도 영재교육 비전과 목표 4. 영재교육의 운영 근거 및 방침
II. 영재교육기관 운영	1. 영재교육기관 연간 추진 일정 2. 영재교육기관 운영 흐름도 3. 영재교육원 강사 임용(재임용) 4. 영재교육원 학생 안전 지도 5. 영재교육원 예산·편성 요령 6. 영재교육원 예산·편성 7. 영재교육원 지도교사 협의회 8. 영재교육원 입학식 9.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학습 10. 영재교육원 상담활동 11. 영재교육원 수업공개 12. 영재교육원 수업 컨설팅 13. 영재교육원 산출물 발표회 14. 영재교육원 캠프 활동 15. 영재교육원 수료식



III.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목적 2.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침 3.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일정 4. 영재교육대상자 단계별 절차 5. 영재성 선발 문항 개발·보급 6. 영재교육대상자 행정사항
IV. 영재교육 평가	1. 영재교육기관 자체평가 및 학생 평가
V.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폐지	1.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관련 서식)
VI.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GED) 영재성발달기록부	1. 영재교육기관 출결 및 성적 관리 2. 영재성발달기록부
VII. 법령 및 지침	1. 영재교육진흥법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3. 경상남도 영재교육 관련 지침

4 기대효과

- 영재교육 업무 담당자 행정업무 경감
- 영재교육기관 운영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5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III-4 영재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1 사업 목적

- 교육 현장과 교육정책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 기관별 제5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제언
- 경상남도교육청과 영재교육기관별 맞춤형 협력 체제 강화

2 주요 내용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 영재교육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연구원 등) 협력 체제 구축 운영
 - ※ '26년 전국 영재교육관계자 정책협의회 4회 개최 (4월, 7월, 10월, 11월)
- **대학(경상대, 경남대)과의 협력 체제 강화**
 -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영재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
 - 영재교육기관 위탁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특강 및 캠프 운영
 - 영재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 영재교육 관련 연구 활동
- **한국교육개발원과의 협력 체제 강화**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 선발 도구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
 - GED 시스템을 활용한 영재교육 통계처리 및 활용
 - 영재교육 중앙컨설팅단 연계 등
- **KAIST 부설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의 협력체제 강화**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 영재교육 관련 연구활동
 - 영재교육대상자 교육
 - 사이버 영재교육 등
- **발명영재교육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과의 협력체제 강화**
 - 발명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 발명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도구 개발
 - 발명영재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3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III-5 영재교육 진흥 유공자 표창

1 사업 목적

- 영재교육 발전에 공헌한 유공 교직원을 표창하여 긍지와 사기 진작
- 영재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 유도

2 추진 방침

- 표창 훈격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과 교육감 표창 구분
 - 교육부 장관 표창: 3명(예정), 교육감 표창: 10명(예정)
 - ※ 기관 또는 개인 표창
- 표창 대상자: 영재교육 관련 기관 임용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 표창 대상자 기준(공통)
 - 영재교육 강사 경력
 - 영재교육 활동 유공자 (선발 전형, 자료 개발, 업무지원 등)
 - 영재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성적 우수자
 -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토교사 유공
 - 기타 영재교육기관 주요 업무 담당자
- 추천 시기: 11월 말 예정
- 추천 방법:
 - 단위학교 영재학급 → 소속 교육지원청별 배정 인원 추천
 - 영재교육원(대학 제외) → 각 영재교육원장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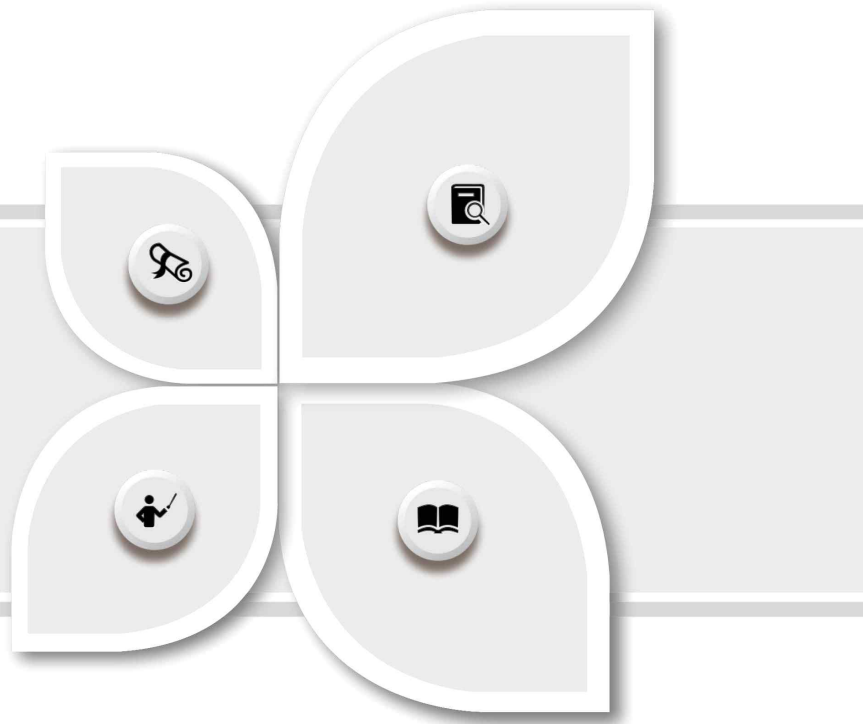
3 추진 내용

순	추진 내용	시기	비고
1	기관별 추천 마감	11월 말	
2	공적심의회위원회 심의	12월 초	
3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 교육감 표창 추천	12월 중	교육부 제출
4	표창 대상자 확정 통보	12월 중	

4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IV. 잠재력 있는 인재 교육 기회 확대



IV-1. 사회적 배려대상자 영재교육 활동 지원 / 43

IV-2.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 44

IV-3. 영재교육 교육기부활동 지원 / 45

IV-4. 영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 46

IV-5. 영재교육 교육활동 홍보 강화 / 47



IV-1 사회적 배려대상자 영재교육 활동 지원

1 사업 목적

-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잠재력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과제(프로젝트) 수행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고 소통과 협업 능력 함양

2 추진 방침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지원
-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영재교육 수혜율 증대

3 추진 내용

- 소외계층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단위학교 영재학급 재학생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소외계층)
 - 지원 내역: 영재 프로그램 체험활동 운영비 지원
- 운영 방법: 대상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원칙(위탁, 타기관 운영 가능)
 - 운영 기간은 주말 및 방학 기간 이용
 - (예시) 운영 프로그램 내용
 - 선진지 견학(연구소,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뮤지컬 관람 등)
 - 초청 특강, 팀별 프로젝트 수행, 테마형 탐구활동 등
 - 활동 후 반드시 학생 산출물(결과 보고서)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
 - 체험 및 캠프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대비를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 대책 강구

4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IV-2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1 사업 목적

-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잠재력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재교육의 기회 보장
- 다양성과 차이를 긍정적 기제로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지원

2 추진 방침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에 해당하는 소외계층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
- 학생 1명당 교사 1인의 멘토링 원칙

3 추진 내용

- 지원 대상: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2항³⁾ 및 시·도별 자체 기준 등에 의거, 영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선발
- 지원 기간: 최대 9년을 지원(초3 ~ 고3)
 - * 상급학교 진학 시 본인의 참여 의지와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수행기관으로 지속 지원 여부 통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멘토교사 지원비: 1인당 연 50만 원(교육부 별도 예산 지원)
- 선발 분야: 수학, 과학, 정보, 인문사회 분야 등
 - * 예술(30명), 체육(30명) 영재는 별도 선발 운영 예정
- 선발 인원: 카이스트 지원예산과 본예산 편성 규모를 고려하여 선발
- 지원 내용: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사 멘토링, 찾아가는 영재 수업, 방학 중 집중 캠프 등

4 예산 내역: 52,500천원

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2항: 교육급여 수급자,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특수교육 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IV-3 영재교육 교육기부활동 및 산출물 지도 지원

1 사업 목적

- (더불어) 과제 수행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고 소통과 협업 능력을 함양
- (나누고) 영재학생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교육기부 실천
- (즐기자)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확산

2 추진 방침

- 학생들의 잠재된 끼를 발휘하여 교육기부를 실천하는 기회 확대
(영재학급 영재 영역이 포함된 기부활동을 권장)
-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기부활동을 실천
- 형식적인 영재학급 산출물 발표회를 지양하고 교육기부활동이 포함된 산출물 발표를 병행한 운영 권장
- 체험활동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전교육 및 안전 대책을 강구

3 추진 내용

- 대상: 단위학교 영재학급
- 기간: 2026. 4. ~ 12.
- 방법: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원칙
- 운영 프로그램(예시)
 - 문선초: '네모로직,오토마타' 교내 하급생들에게 재능기부로 영재학급 선발 홍보
 - 신방초: '푸른 지구만들기' 주간 및 꿈끼 탐색 페스티벌 개최
 - 거제중: '에너지 절약 캠페인' 태양광 정원등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홍보
 - 창원중: '지역사회 교육기부' 4개 관내 초등학교 태양계행성 열쇠 고리 만들기 재능 기부
 - 안창초: 교내 수학,과학(로봇팔 만들기,맹거스핀지 열쇠고리만들기,스트링아트) 프로그램 운영

4 기대효과

- 영재학생의 재능 계발 여건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기부활동 기회를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려심 함양과 함께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문화 확산

5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IV-4 영재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1 사업 목적

- 영재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발굴된 영재의 수준과 분야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영재교육원)을 연결하여, 교육 참여·사사 등 필요한 교육 기회 제공

2 학생·학부모·교사 영재교육 상담 및 진단 서비스 제공

- 대상: 영재학생, 학부모, 교사
- 시기: 2026. 3. ~ 2027. 2.
- 장소: 협의 후 결정
- 운영 방법
 - 수시 상담, 예약 상담, 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영재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 영재교육 특례 대상자, 영재교육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학생 관찰
 -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교사 관찰추천제 내실화 연수 지원, 영재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합한 영재교육기관 연결 및 지속적 활동 지원
 - 소외계층 및 미성취 영재 발굴을 통한 잠재적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기회 마련

3 고도 영재 판별 및 지원 체제 마련

- 대상: 영재학생, 학부모, 교사
- 시기: 2026. 3. ~ 2027. 2.
- 장소: 협의 후 결정
- 운영 방법: 영재교육 특례자를 위한 다단계 심사 및 판별 체계를 마련하여 고도 영재의 발굴 및 지원 시스템 운영
- 운영 절차: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에서 대상자 검토 ⇒ 해당 영역 영재교육 연구원에 선정 심사의뢰 ⇒ 영재교육 특례자 판별 및 지원 재배치(영재교육기관)



4 예산 내역: 비예산 사업

IV-5 영재교육 교육활동 홍보 강화

1 사업 목적

-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입체적 홍보를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 증진 및 인식 제고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교사 연수로 교사 관찰·추천 방법 정교화
- 학부모의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2 추진 방침

-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영재교육원 교육일정, 교육 프로그램 안내, 영재캠프, 영재교육 우수사례 등을 홍보
- 각종 연수회 실시 : 각급 학교 진로부장, 학부모, 영재교육 담당강사, 학교장 등
- 보도자료 이용 : 조·석간신문, TV, 인터넷 뉴스 등
- 온라인 매체 이용 :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방송
- 학부모 연수 기회 제공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3 추진 내용

- 대상: 영재학생, 학부모(일반 포함), 교사
- 시기: 2026. 1. ~ 2026. 12.

구 분	시 기	방 법	비 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1월	보도자료	영재교육원, 초.중.고
영재교육원 강사 대상 연수	적기	보도자료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개최	적기	보도자료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 선발요강 발표	9월	홈페이지, 보도자료	영재교육원, 초.중.고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	적기	강연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 수수료	12월~익년1월	보도자료 제출	영재교육원, 초.중.고
영재교육 교육기부활동	적기	보도자료	영재교육원, 초.중.고
산출물 나눔 축제	9월 ~ 12월	보도자료 제출	영재교육원
영재교육기관 평가(성과)보고회	익년 2월	보도자료 제출	경상남도교육청

4 예산 내역 : 비예산 사업

5 2026. 경남 영재교육예산

1 2026. 영재교육 운영 예산 확보 현황

2026.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예산

(천원)

교원 연수	영재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영재교육원 운영	합계
91,500	265,600	52,765	1,877,275	2,287,140

※ 영재교육원 학급당 지원예산은 제외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자재 예산

구 분	예산액 (천원)	세부집행계획
영재교육담당교원 직 무 연 수	91,500	영재교육 담당교원 기초·심화과정 직무연수 등 7개 과정 (1,200명 이상)

영재교육 활성화

자재 예산: 265,600천원

구 분	예산액 (천원)	세부집행계획
영 재 교 육 기 관 평 가 및 컨 설 팅	2,100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컨설팅
영 재 학 급 운 영	211,000	찾아가는 창의융합캠프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비 포함 안됨(45학급, 4,000천원/학급당)
영 재 키 움 프 로젝트	52,500	영재키움 프로젝트 분담금
계	265,600	

● 특별교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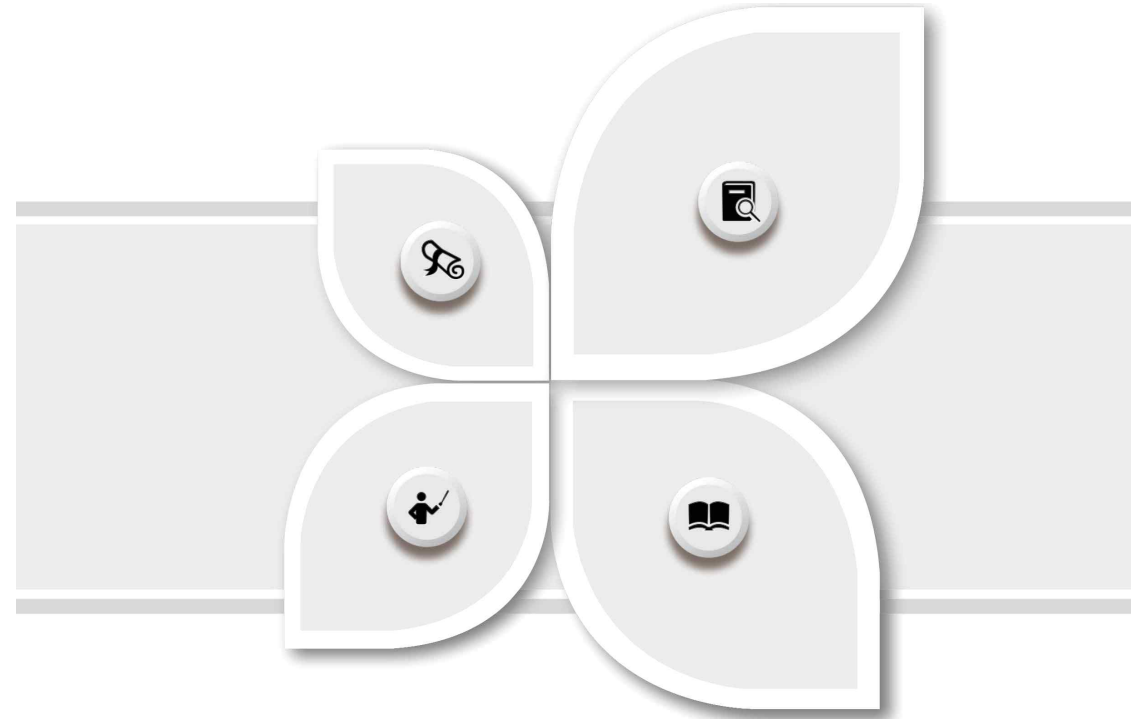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천원)	세부집행계획
2024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3-09.교육과정]		38,765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지원 위탁 분담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SWAI과학인재육성기반마련 및영재 교육운영내실화지원(특교3-7-4)		14,000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및현장적용 분담금 (한국교육개발원)
계		52,765	

⑤ 영재교육원 운영

● 자체 예산

구	분	예산액 (천원)	세부 집행 계획
영 재 교 육 원 운 영 지 원 (교 육 지 역 청)	1,650,000	(재원배분)26개 영재교육원 운영(162학급, 10,000천원/학급) 지역별 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 체험캠프 운영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	900	경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영 재 교 육 시 도 교 육 청 공 동 사 업 지 원	57,300	영재교육자료개발 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14,000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43,300천원)	
사이버영재교육원 운 (미 래 교 육 원)	169,075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71,175천원) KAIST 사이버영재교육원 위탁(97,900천원)	
계	1,877,275		

부 록



1. 2026. 초.중 단위학교 영재학급 현황 / 53
2. 영재교육진흥법」 / 55
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62
4. 경상남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 77
5. 영재교육기관 수당 지급 지침 / 79
6.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업무 시행 지침 / 84
7. 영재교육기관 강사(담임) 임용 지침 / 89
8. 영재교육기관 운영비 정산서 서식 / 97
9. 영재교육기관 폐지신청서 서식 / 98
10. 영재교육기관 자율 감사 점검 / 99
11. 2026. 영재교육 연간 일정(예정) / 100

부 록 ①

2026. 초.중 단위학교 영재학급 현황: 총 41개교 42학급

1. 초등학교 영재학급: 32개교 33학급

연번	학교급	지역	학교명	영재분야	대상 학년	비고
1	초	거제	대우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	
2	초	거제	제산초등학교	과학수학 SW(소프트웨어)	초5 초4~초6	2학급
3	초	고성	고성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4	초	김해	관동초등학교	과학수학	초5	
5	초	김해	김해구지초등학교	수학과학	초3,4	
6	초	김해	김해대곡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7	초	김해	김해동광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8	초	김해	수남초등학교	과학수학	초3	
9	초	김해	진영금병초등학교	수학과학	초4~초5	
10	초	남해	남해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	
11	초	밀양	비리벌초등학교	수학과학	초4~초5	-
12	초	사천	동성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13	초	사천	문선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	
14	초	사천	사남초등학교	과학수학	초3	
15	초	사천	용산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16	초	양산	대운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	
17	초	양산	백동초등학교	과학수학정보	초4	
18	초	양산	삼성초등학교	수학과학	초4~초5	
19	초	양산	중부초등학교	수학과학	초4	
20	초	양산	황산초등학교	과학수학영어	초5	
21	초	진주	남강초등학교	수학과학	초4~초5	

연번	학교급	지역	학교명	영재분야	대상 학년	비고
22	초	창원(마)	가고파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23	초	창원(마)	해운초등학교	수학과학	초5	
24	초	창원(진)	안창초등학교	수학과학	초5	폐지신창
25	초	창원(창)	남정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26	초	창원(창)	반송초등학교	과학수학	초5	
27	초	창원(창)	삼정자초등학교	수학과학	초4	
28	초	창원(창)	신방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29	초	창원(창)	용호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초5	
30	초	창원(창)	웅남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	
31	초	창원(창)	평산초등학교	과학수학	초3~초4	
32	초	통영	진남초등학교	수학과학발명	초4~초5	
33	초	통영	통영초등학교	과학	초4	
34	초	함안	호암초등학교	과학수학	초4	

2. 중학교 영재학급: 9교 9학급

연번	학교급	지역	학교명	영재분야	대상 학년	비고
1	중	거제	거제고현중학교	수학과학통합	중1	
2	중	거제	거제중학교	과학수학통합	중2	
3	중	거제	계룡중학교	수학과학	중1	
4	중	양산	개운중학교	수학과학통합	중1	
5	중	진주	대아중학교	수학과학	중1	
6	중	창원(마)	성지여자중학교	수학과학	중1	
7	중	창원(진)	진해남중학교	수학과학통합	중2~중3	
8	중	창원(창)	남산중학교	과학수학통합	중1	
9	중	창원(창)	창원중학교	과학수학통합	중2	

부 록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31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 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 "영재교육 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그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11.7.21.]

제4조의 2(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영재의 보호자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4조의 3(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사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11.7.21.]

제4조의4(시·도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 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①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9조 삭제 <2005.12.7.>

제10조 삭제 <2005.12.7.>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 등의 장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수 인정 및 제3항에 따른 학점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1조의 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1조의 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①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 개정 2011.7.21.]

제12조(교원의 임용·보수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2조의 2(교원의 파견근무)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운영, 제2항 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전문 개정 2011.7.21.]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례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제심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위원회에 제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는 제1항의 제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8조(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① 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학·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학·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7.21.]

제18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16.2.3.]

부 칙 <제15231호, 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부(융합교육팀) 044-203-6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교육부 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 ③교육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제3조 삭제 <2006.12.21.>

제4조 삭제 <2006.12.21.>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6.12.21.>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목 개정 2006.12.21.]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제목 개정 2006.12.21.]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 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10.]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도위원회"로, "교육부 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전문 개정 2006.12.21.]

제10조의 2(시·도위원회의 간사) ①시·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도위원 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 신청서에 제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③ 삭제 <2006.12.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 교과 또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 사회적 배려대상자(경상남도교육청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일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 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 접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목 개정 2006.12.21.]

제13조 삭제 <2006.12.21.>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

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 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목 개정 2006.12.21.]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제목 개정 2006.12.21.]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 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 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국·공·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설비현황 및 확보 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 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교육부 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 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 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운영 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 승인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 국·공립연구소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현황 및 확보계획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 계획
7. 소요경비의 조달 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설치·운영 예정일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 회의심의 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등) ①교육부 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 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2.10.29.>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 희망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2008.10.14.>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2008.10.14.>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겸임근무 등)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직원의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③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제7조의 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①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 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 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① 삭제 <2008.10.14.>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교육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목 개정 2006.12.21.]

제35조의 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제37조 삭제 <2006.12.21.>

제5장의 2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제37조의 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조 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배치 심사
3. 그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본조 신설 2006.12.21.]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의 관계자
5. 그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37조의 4(특례자의 선정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배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37조의 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 교과 또는 특정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37조의 6(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학·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배치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배치 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배치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교육감은 전학·배치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 교육기관에 전학·배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6장 보칙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운영) ①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1. 한국 교육개발원
2. 한국 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교육부 장관은 제1항 제1호의 한국 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 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 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017.7.26.>

③교육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제38조의 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 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38조의 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교육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기자재비·운영비·교재개발비·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제목 개정 2006.12.21.]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8.6.]

부 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88>까지 생략

별표 ① <개정 2013.3.2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관련)

구 분	임 용 기 준
영재학교 교장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 교감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 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 전문상담 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급 담당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급 전문상담 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사서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별표 ② <개정 2013.3.23>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6조제1항관련)

구 분	임 용 기 준
원장	1.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증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 자격이 있는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분야 또는 이와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별표 ③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

구 분	임 용 기 준
교과담당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상담담당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상담 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사서담당강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부 록 ④

경상남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창의인재과-11460(2019.8.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 3 내지 4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경상남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경상남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남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사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교육감이 승인한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6. 「영재교육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7. 경상남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상남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남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영재의 보호자 위원의 임기는 자녀 학생이 영재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궐위시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부 록 5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수당 지급 지침

창의인재과-17693(2017.12.18.)
창의인재과-19742(2020.10.29.)
창의인재과-3372(2024.02.26.)
개정: 창의인재과-2381(2025.02.07.)

I. 영재교육기관의 교원(강사) 수당 지급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④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임.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학교의 경우 기본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은 운영학교와 법령상 외부기관으로 보아야 함.

-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이므로 강사수당, 심사수당, 심의수당,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강사수당, 심사수당, 심의수당,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의 예산집행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 억제

II. 영재교육기관의 교원(강사) 수당 지급 지침

1. 영재교육원의 교원(강사) 수당

가. 원장 관리 수당: 미지급(※ 타 교육활동과 형평성 고려)

나. 강사 수당

1) 일반강사의 수당

① 일반강사 임용 기준: 학급당 4명 이상

※ 일반강사: 도내 초, 중등 교원 및 영재교육전문가로 영재교육기관장이 임용한 자

②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수업수당	담임수당	교무부장 수당	프로젝트 (산출물) 지도수당
지급 기준액	1시간, 50,000원	월 30,000원	월 50,000원	1시간, 30,000원
참고사항	1시간: 50분 기준 (초등학교/중학교 공통)	12회 지급 3월 ~ 익년 2월	담임과 부장 겸임 가능 (이중지급 가능)	

※ 원격 수업(비대면 쌍방향 수업 등)의 강사료는 차시당 50,000원을 지급함.

③ 협의 수업(Co-Teaching)을 위해 지도교사 2인 이상이 동시에 같은 수업 강의를 할 경우 강사수당은 2인 이상에게 동등하게 지급할 수 있음(예, 프로젝트 수업)

④ 보조강사 수당은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음.

⑤ 시간 외 근무 수당: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학생을 직접 지도한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지급 가능

※ 절차: 영재교육원에서 관련 계획 학교에 통보 → 소속학교에서 시간 외 근무 신청 → 근무 실시 → 영재교육원에서 시간 외 근무 실적을 소속 학교에 통보 → 수당 지급

2) 초빙강사의 수당

① 초빙강사: 일반강사 외, 내·외부로부터 초빙, 위촉된 강사

② 강사 수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름

③ 강사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실비 지급

3) 그 외의 수당

① 연구 수당: 영재교육기관 교원(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 수당을 지급 가능.

구 분	연구 수당(원장)	연구 수당(부원장)	비고
금액	월 100,000원	월 70,000원	12회 지급(3월 ~ 익년 2월)

※ 5개 고교 부설영재교육원 연구 수당내역은 영재 교육 기관별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2.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강사수당

가. 일반강사 수당: 과학직업과-16794(2016.10.13.), -3706(2016.3.10.)

① 일반강사: 해당 학교 교원 및 타 학교 교원으로 학교장이 임용한 자

② 강사 수업 수당: 차시당 40,000원 / 산출물 지도 차시당 30,000

※ 학교급, 자체예산 편성 정도에 따라 추가 증액 지급 가능

※ 1시간 기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이상

※ 보조강사 수당은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음.

※ 원격 수업(비대면 쌍방향 수업 등)의 강사료는 차시당 40,000원을 지급함.

③ 학급담임 수당: 월 30,000원(12개월) 이상

- 영재학급 수업하지 않고 단순한 업무담당자인 경우는 미지급, 반드시 학급 담임이면서 강사 역할 수행 시 지급

※ 반드시 임용 근거 마련(내부결재, 임용 대장(강사/담임) 비치)

나. 초빙강사 수당

① 초빙강사: 일반강사 외, 내·외부로부터 초빙, 위촉된 강사

② 강사수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지침 따름

③ 강사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실비 지급

3. 기타 수당

가. 위원회 참석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참석 수당	일 ·기본: 70,000원 ·초과: 30,000원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자 지급 가능
영재교육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참석 수당	일 ·기본: 50,000원 ·초과: 30,000원	외부위원만 지급 가능
○ 초과수당: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추가 ○ 공무원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심사(심의)수당'만 지급 가능 ○ 협의회 형식의 위원회는 참석 수당을 편성할 수 없음 ○ 위원회 참석 수당과 나머지 다른 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⑦항 선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그 외의 수당(시험관리 수당/학생, 교직원 대상 각종 대회 관리 수당)

- 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학생, 교직원 대상 선발 및 각종 대회 운영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동일 기관장 소속인 경우 지급 불가
예시 1) 경남초등학교 소속 교사가 경남초 영재학급 선발 관련 수당 지급 불가
예시 2) 경남초 소속 교사가 경남지역교육청영재교육원 선발 시험관리수당 지급 가능
예시 3) 지역영재교육원 소속 강사가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 시험 관리 수당 지급 가능
- ②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관련 시험관리 수당(출제, 채점, 문제선정 심의, 문제 편집, 시험감독, 면접, 감금), 학생, 교직원 대상 선발 및 각종 대회 관리, 각종 사업 추진수당 등(단,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중간/기말) 제외)
- ③ 지급 기준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름

4. 교육공무직(과학실험원 등) 수당

①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재교실 등 업무 보조는 과학실험원 기본 담당업무임

- ④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은 교육공무직원의 통상임금(행정실 협조)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대체근무 불가)
- ⑤ 방학 중 근무는 「교육공무직 근무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Ⅲ. 영재교육 운영비의 수익자 부담(일부 또는 전부)

1.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등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영재교육에 필요한 경비(선발 비용, 교육과정 운영비, 영재캠프 운영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영재교육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운영 규정에 정수 근거를 마련한 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영재학급의 경우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
3.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대상자의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영재교육 소외계층(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예: 자유수강권 등)을 강구해야 함
4. 영재 캠프나 현장 체험학습은 전체 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무리한 계획으로 인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보호자의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함
5.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된 비용도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정산해야 함

Ⅳ. 행정사항

가. 본 규정(지침)은 2026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연장근무시간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실제 연장근무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③ 근무시간 내 수당 지급 불가하며 하루 8시간 이내에서 운영

※ 「과학실험원 인력 운용 지침」(과학직업과-5914, 2016.04.08.)에 따르면 발명교실, 과학영

부 록 6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전입학 업무 지침

개정: 창의인재과-14222(2019.10.04.)

개정: 창의인재과-19742(2020.10.29.)

1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중학교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편입학 등)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 제4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2018~2022):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2 목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각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영재교육대상자의 전입학 업무수행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도모하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영재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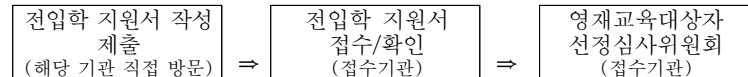
3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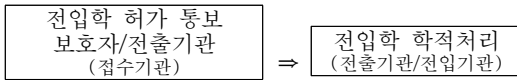
- **도내 영재교육원 전입학:**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에 선발되어 재학 중 도내 타 시·군 학교로 전입학한 자
 - 창원지역은 학교군 및 중학구(中學區,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를 달리하여 전입학한 자도 포함
- **도내 단위학교 영재학급 전입학:**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선발되어 재학 중 도내 타 시·군·구로 전입학한 자
- **타 시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타 시·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 재학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로 전입학한 자(대학교 영재교육원 제외)

4 기본 방침

- 각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수료)에 지장이 없거나, 편성 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④) 범위 내에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도내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재학 중인 자의 전입학은 **영재교육기관의 위계 관계 및 선발 범위(지역)을 고려하여** 전입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단위학교 영재학급 간 전입학 허용
 -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간 전입학 허용
 - 단위학교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간 전입학 **불허**
 - 학교(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간 전입학 **불허**
 -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고등학교 영재교육원 간 전입학 **불허**
- 단위학교 영재학급 재학 중 타 시·군, 타 학교군, 타 중학구의 영재학급 운영 학교로 전학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
- 영재교육기관의 전입학은 **동일 급간/동일 전공분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유사 전공분야는 영재교육기관장이 판단하여 허가)
- 영재교육원 재학 중 타 시·도/타 시·군 또는 타 학교군 및 중학구로 전학 한 자가 **재학 중인 영재교육원에서 계속 교육받기를 희망**하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통학문제) 대비 학생/보호자 동의서 필수 제출
- 전학한 학교에 영재학급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인접 학교 영재학급 입학은 **불허한다.**(단, 지역거점 영재학급 운영학교 제외: 남해 지족초 영재학급)
- 타 시·도에서 전입학한 자의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허용범위는 동급(영재학급/영재교육원) 기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영재교육기관 재학생의 전학에 따른 결원은 선발대상자 차순위 자 또는 추가모집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단, 결원에 따른 충원은 해당학년도 4월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 전입학에 의해 전출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적에 의거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5 전입학 절차





6 전입학 허용 시기

- 영재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이수(수료) 가능 기간 내 수시 허용
- 교육과정 이수(수료) 기준은 각 영재교육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름

7 제출 서류

- 전입학 희망서(서식 1, 소정 양식) 1부
- 전학 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재학증명서(기관별 양식) 1부
- 전출한 학교의 재학증명서(소속 학교 소정 양식) 1부-영재교육원 제출용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성 발달기록부 사본(기관별 소정 양식) 1부

8 행정사항

- 전입학 허용 여부는 지원서 접수 후 반드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 보호자 및 영재교육기관에 통보
- 전입학 허용 영재교육기관장은 교육과정 이수(수료)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학적 처리
- 전입학으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 전형 차순위자 또는 추가 모집 방법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음(해당 학년도 4월 30일 이내로 제한함)

9 부칙

가. 본 지침은 2021. 3. 1. 부터 시행한다.

서식 ①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지원서

				구 분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지원서				접수번호	
지원자	주 소				
	(전입전) 영재교육기관명	00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명	수학반	
	(희망)영재교육기관명	00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명	수학반	
	성 명	홍00	전입학 전학교	00초등학교	
			학년	6학년	
생년월일		성 별			
보호자	주 소	상 동			
	성 명		지원자와 관계		
	연 락 처		전입학날짜 (생기부기록)		
본인은 전학으로 인하여 귀 영재교육기관으로 전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 (인) 서약사항 : 위 기록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입학취소)도 감수하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장(학교장) 귀하					

서식 ②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전입학 허가 통지

부 록 ⑦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영재학급) 강사(담임) 임용 지침

제정: 창의인재과-16981(2017.12.08.)
개정: 창의인재과-23408(2018.12.13.)
개정: 창의인재과-1378(2020.1.23.)
개정: 창의인재과-19742(2020.10.29.)

I. 영재교육기관 담당 교원(강사) 임용 근거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기준

구분	임용 기준
원장	1.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증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자격이 있는 자 3.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분야 또는 이와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 ③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000영재교육원(영재학급) 전입학 허가 통지서

학교명:

성명: 학년:

상기명 학생의 000학교 영재학급(000) 전입학을 허가합니다.

20**년 **월 **일

영재교육기관장 (인)

[별표 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기준

구분	임용 기준
교과 담당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 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상담 담당강사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상담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사서 담당강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4. 기타 규정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 조건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II.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의 교원(강사) 임용 지침

1. 영재교육원의 교원(강사) 임용

가.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

1) 원장: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

2) 부원장: 소속기관의 교원(교육 전문직원 포함) 중 원장이 지명

※ 예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영재업무담당 부장, 교육지원청 영재업무담당 과장, 단위학교 교감 등

※ 원장 부재 시 그 직을 대행함

3) 강사: 학급당 4명(초빙강사 제외)

4) 초빙강사

나. 강사의 임기 및 임용

1) 영재교육원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강사는 영재교육원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임용 및 재임용(연임)한다.

3)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는 5~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원장, 간사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세부 사항은 영재교육원별 운영 규정에 명시)

4) 소속 학교와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강사가 두 곳 이상의 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에 임용될 수 없다.

5) **초등 영재반은 초등 교사, 중등 영재반은 중등 교사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신규 강사의 선발 및 임용

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임용한다.

① 담당 예정인 교육 분야와 관련된 직무연수 이수 실적(60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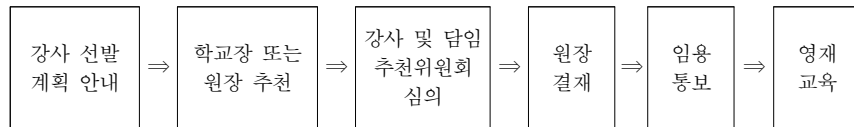
- ② 담당 예정인 교육 분야와 관련된 학위
 - ③ 영재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와 영재교육을 담당할 경력
 - ④ 해당 교과영역의 정부 주관 전국대회 입상 실적(학생지도 실적 포함)
 - ⑤ 기타 영재교육 지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실적
- 2) 신규 강사 선발·임용 시에 해당 학급 및 교과 분야의 교원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한다.
- ① 영재교육원 강사 선발 시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재교육 기초과정 연수(60시간 이상) 및 심화과정 연수(90시간 이상)를 모두 이수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재교육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연수란?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등에서 실시한 연수로서 기초과정 연수(60시간 이상), 심화연수(90시간 이상) 해당

- ② 발명교육센터 임용 강사 중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발명교사인증제 자격(마스터/1급/2급) 취득자에게 영재교육원 발명영재반 강사 선발 시 우선 임용한다.
- 3) 강사 임용 시, 특정 지역(군/시) 또는 학교의 소속 교원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 강사 공개 선발은 도내 전 지역 교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원칙으로 한다.
- 4) 초빙강사: 학급당 강사 정원 외의 내·외부로부터 초빙, 위촉된 강사

라. 영재교육원의 신규 강사 선발 절차

1) 선발 절차(안)



2) 선발 과정

- ① 신규 강사는 기존 강사의 임용 취소나 재임용 심사 후, 결원이 있을 시 선발한다.
- ② 각 영재교육원은 본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강사 선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선발공고일 이전 도교육청 창의인재과에 보고한다.
- ③ 강사 선발 그 기준과 절차를 공문서(홈페이지)로 안내하고, 공개전형으로 한다.
- ④ 영재교육원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용한다.

3) 전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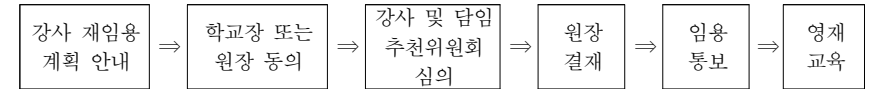
- 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
- ② 서류전형: 자격심사에 중점을 두며, 기본점수 외의 실적 차이에 의한 점수 차를 최소화하여 유능한 교사가 선발되도록 한다.
- ③ 면접전형

- 면접전형 대상자는 영재교육원별 여건에 따라 자체 계획에 의거 대상 인원을 정할 수 있다.
-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영재교육 강사로서의 자질, 학생지도 계획, 영재아 육성을 위한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4) 제출 서류: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학교장(교육장) 추천서, 실적 증빙자료 등

마. 강사의 재임용 심사

1) 재임용 절차(안)



- 2) 재임용 심사 대상자: 동일 학급의 동일 과목의 강사를 연임하고자 하는 자
 ※ 학급이나 과목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규 강사 선발·임용 절차에 따른다.
 ※ 임용 전후 영재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기초과정 혹은 심화과정) 미이수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 3) 해당 영재학급 강사로 1년간 근무기간 동안 다음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며, 평가 항목별 점수를 설정하여 모든 항목에서 기본점수 이상을 획득할 시에 재임용한다. 영재교육원별 자체 계획에 의해 평정 기준을 마련한다.
- ① 연수 이수 실적
 예시) 연수방법(원격, 출석), 연수시간 등
 - ② 학생지도 실적
 예시) 연간 수업시간, 산출물지도 실적, 학생 수상 실적 등
 - ③ 학생의 수업 만족도
 예시) 학생 수업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등
 - ④ 근무 태도
 예시) 근태, 영재교육원 행사 참여 실적 등
- 4) 제출 서류: 재임용 심의 신청서, 학교장 동의서, 실적 증빙자료 등

바. 강사의 임용

- 1) 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교육 강사 임용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임용되는 강사에게 임용장을 발급한다.
- 2) 영재교육원 강사 선발은 발명교육센터 임용 강사 선발 시기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시기까지 시행한다(단, 추가 모집은 수시 시행).
- 3) 각 영재교육원은 강사 임용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교육감(창의인재과)에게 보고한다.

사. 강사의 임용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재교육원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영재교육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 자(학생, 학부모로부터 민원 제기된 자)
- 2) 장기 출장(연수), 질병, 장기 휴가 등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해당자는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해당 영재교육원에 신고해야 한다.)
- 3) **당해 연도 휴직**, 중징계 이상 징계 처분 중인 자, 4대 비위 및 음주 운전 관련 징계자(당연 취소, 해당자는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해당 영재교육원에 신고해야 한다.)
- 4) 교무부장에 추천 또는 임명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교무부장 직을 거부하는 자(당연 취소)
- 5) 학급 담임 배정 순서 명부에 따라 담임을 맡을 자가 담임 임용을 거부(포기)하는 자(당연 취소)

아. 영재교육원 학급 담임 배정

1) 기본 조건

- ① 경남교육청 주관하는 영재교육 기초과정 출석 직무연수(60시간 이상)와 심화과정(90시간 이상) 출석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단, 발명 강사 제외)
- ② 영재교육에 대한 열의가 충만하며 헌신적인 태도를 가진 자
- ③ ①, ②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중 부득이한 경우, 담임으로 임명 가능하나 승진 가산점 미부여
- ④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 중인 교사의 경우 승진 가산점을 미 부여하며, 강사는 할 수 있으나 학급 담임을 할 수 없음.

2) 학급 담임 배정 우선 순위

- ① 소속 영재교육원의 담당 학급 장기 근무자(※ 담당 학급의 신규 임용 순)
※ 예시) 강사 결원에 따라 신규 강사 임용자와 전년도 담임 역임자의 담임 순서
- 장기근무자(전년도 담임 역임자) 우선 배정, 신규 임용자 차순위 지정
- ② 영재교육 지도경력이 많은 자
- ③ 영재교육 심화과정 출석연수 이수 연도가 빠른 자

3) 학급 담임 배정 기준 및 절차

- ① 매 학년도마다 학급별 담임 배정 순서 명부(발명반 포함)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담임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급 담임은 2년 연속 역임할 수 없다.**
- ③ 영재교육원 담임은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 ④ 다음 연도에 담임을 맡을 자를 부담임으로 지명하여 담임의 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⑤ 학급 담임에게는 임명장을 발급하고, 영재교육 강사 임용 대장에 등재한다.

⑥ 학급 담임 임용기간 중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한 경우는 교체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창의인재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영재교육원 교무부장 임용

- 1) 영재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무부장을 둔다.
- 2) 학급 담임 중 1명을 선정하여 교무부장을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재교육원 별 임용 기준을 마련하여 임용한다.
(※ 예시: 학급별 순환 임용, 영재교육원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 추천 등)
- 3) 교무부장은 영재교육원 강사를 대표하며 영재교육 업무담당자 및 강사와 협의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업무를 지원한다.

차. 영재교육원 강사 전문성 신장

- 1) 영재교육원 강사는 강사 임용 전·후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는 등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 영재교육원 강사로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 전 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 관련 출석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단, 발명 강사는 발명이나 영재교육 관련 출석 연수 해당)

카. 기타 사항

- 1) 영재교육원 강사 근무실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에 따라 선택가산점(초등), 실적가산점(중등)의 상한점에 도달한 자는 우수한 강사의 신규 임용과 가산점의 고른 혜택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강사 결원 등)이 없는 경우 강사 또는 학급 담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영재교육원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3) 각 영재교육원은 본 지침에 따라 영재교육 강사(담임) 임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영재교육 강사(담임) 임용 기준 및 절차: 공고일 이전
 - ② 영재교육 강사(담임) 임용 현황(학급 담임, 강사 교체 포함): 매년 2월 말 보고
 - ③ 승진가산점 인정 대상자 명부: 매년 말 보고

2.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강사 임용

가. 단위학교 영재학급 강사 일반 자격 기준

- 1)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자

격증을 가진 자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임용한다.

- ① 담당 예정인 교육 분야와 관련된 직무연수 이수 실적(15시간 이상)
- ② 담당 예정인 교육 분야와 관련된 학위
- ③ 영재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영역의 영재교육을 담당할 경력
- ④ 해당 교과영역의 정부 주관 전국대회 입상 실적(학생지도 실적 포함)
- ⑤ 기타 영재교육 지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실적

나.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강사 임용

- 1) 학급당 강사는 1명 이상(4명 권장)으로 하며, 강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복수의 강사를 임용한다.
- 2) 영재학급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가 겸할 수 있다.
- 3) 학교장은 영재학급 강사 중에서 학급 담임을 임명하여 영재교육과정 운영과 생활 지도 등을 관리하게 한다.
- 4) 학교장은 영재교육 업무를 교무업무 분장에 반영하여 영재학급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한다.
- 5) 해당 학급의 전공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영재교육 전문성 신장

- 1)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는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는 등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영재학급 강사는 강사 임용 전·후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는 등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3) 영재학급에 강사로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 관련 직무연수(15시간 이상)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8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비 정산서

()영재교육원장(직인)

1. 운영 기간: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말

2. 사업 집행 결과

(단위 : 원)

구분	교부/재배정/ 재원 배분	자체 편성 예산 (지자체지원금)	예산 총액	집행금액	잔액
재원배분	00,000,000				0
1차 추정					

※ 발명영재반 운영비 포함 작성(발명교육센터 예산 제외)

3. 지출 내역

(단위: 원)

항목	지출내역	금액	비고
강사료 및 여비			
원고료			
학습기자재 및 교부구입			자세히 기술
교재제작비 (인쇄비)			
캠프/체험학습 활동비			
협의회비			자세히 기술
각종 수당			자세히 기술
기타			
	계		

※ 지출내역: 산출 근거 간략하게 작성, 증빙서류: 영재교육원 보관(위 항목 외 필요시 추가)

4. 예산 편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

부 록 9

경상남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 00학급 폐지 신청서

구분	전면폐지	부분폐지
		○

기관명	00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원장(교육장)	0 0 0				
기관주소	00시 000대로 000번길0				대표전화	000-0000				
					신청서 작성자	성명: 0 0 0 ☎ 010-0000-0000				
영재학급 승인현황	영재 분야	인가 학급수	선발 대상	모집 정원	선발 인원	입학 경쟁률	최종이수 인원	이수율	비고 (승인연도)	폐지 여부
	중등수 학심화	1학급	중1~2	20명					9명	폐지
폐지사유	- 근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장 제22조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 2026학년도 00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요강 : 최종 등록자가 12명 미만인 경우는 영재학급이 폐지됨 - 2026학년도 00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의 중등심화과정 지원 학생수가 10명 미만으로 영재학급 폐지를 신청함. 제출서류 1. 영재학급 폐지 신청서 1부. 2. 선정심사위원회 협의록 1부. 3. 학교운영위원회 안전 상정후 결과 확인 공문 사본 1부.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영재학급 폐지를 신청합니다.

2026. 9. 00.

00학교장 성명 : 0 0 0 직인(생략)

※ 전자문서 문서첨부로 직인 날인 대신함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부 록 10

영재교육기관 자율 감사 점검

업무 구분	감사 점검 내용	관련 규정
영재교육 (영재교육 담당)	- 영재학급 운영 방법의 적절성 - 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 학급당 20명 이하로 편성 여부 - 학급당 연간 120(105)시간 이상 운영 여부 (2019학년도, 이후부터 적용) (2018학년도까지는 학급당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 -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 영재학급 강사 관리의 적절성 - 담임 임용, 임용대상 관리 여부 - 강사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 영재학급 운영 관련 수당 등의 예산 범위 내 지급 여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6조 - 영재교육 기본운영계획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서류 · 영재교육 관계철 · 강사 및 담임 임용 대장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근거 및 조치 사항	비고
1. 영재학급 운영학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2. 영재학급 수료 학생의 이수요건 충족 여부			
3. 영재학급 운영 관련 강사수당, 선정심사 위원회 수당, 학생선발 수당 등의 예산범위 내 지급 여부			

자율점검 후 '점검 결과' 해당란에 ○, △, × 표시 【○: 적정, △: 미흡, ×: 부적정】

경상남도교육청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지 적 유 형	처 분 기 준		
	징계	경고	주의
영재학급 운영 방법의 부적정		○	○
영재학급 운영학교의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
영재학급 운영 관련 수당 등의 예산 사용의 부적정	○	○	○

사례 영재학급 운영·관리 부적정

○○학교에서는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면서 출석 미달로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20○○년 3명, 2018년 5명 이수 처리하였다.

부 록 11

2026학년도 영재교육 연간 일정(예정)

일시	도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3월	-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비 재배정 및 교부 - 고교부설 영재교육원 운영비 교부 - 경남교육청 위탁 KAIST 사이버영재교육원 계획 알림 - 영재교육연구회 공모 - 찾아가는 디자인싱킹 캠프 공모 - 맞춤형 영재교육 특강 공모 - 영재교육 업무 매뉴얼 개발 - 영재교육 프로그램 공모 - 영재교육원 강사임용 현황 알림	- 영재교육원 운영계획서 제출 -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비 재배정 및 교부 - 영재교육원 교육기부활동, 체험활동 운영 공모 신청 - 영재성 검사도구 배부 (희망교) - 영재교육원 담당자 협의회1	- 영재학급 교육기부, 체험활동 신청 - 경남교육청 위탁 KAIST 사이버영재교육원 안내 - 영재 교육 프로그램 신청 - 찾아가는 3-STEP 창의융합캠프 신청 - 맞춤형 영재교육 특강 신청 - 영재교육프로그램 신청 - 영재학급 운영 계획 수립
4월	- 영재교육 컨설팅위원 연수 - 영재교육연구회 담당자 협의회 - 영재교육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 영재교육 업무매뉴얼 보급 - 영재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수시)	- 영재성 발달기록부 기초자료 입력 - 관리자, 전문과정 등,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직무 연수 신청	- 영재학급 담당자 협의회1 - 영재성발달기록부 기초자료 입력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신청 - 영재학급 학생, 강사 선발 결과 보고 제출 - 영재학급 운영계획서 제출
5월	영재교육 국가 통계 작성 요청	- 영재교육원 담당자 협의회2 - 영재교육 국가 통계 작성 요청	영재교육 국가 통계 작성 요청
6월	영재교육 기초·심화과정 연수(경상국립대) 신청 안내	영재교육 기초·심화과정 연수(경남대, 경상국립대) 신청	영재교육 기초·심화과정 연수(경남대, 경상국립대) 신청
7월	2027.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원 안내	2027.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제출	
8월		2027.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원 안내 - GED 관찰추천대상자 입력 안내	

일시	도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9월	- 영재교육 국가 통계작성 요청 -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실시	2026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접수 - 영재교육원 담당자 협의회3 - 영재학급 현장 실사 - 영재교육 국가 통계 작성 요청	- 영재학급 담당자 협의회2 - 영재교육 국가 통계 작성 요청 2024.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원 안내 - GED 관찰추천대상자 입력
10월	영재교육 진흥 유공자 표창 신청 안내	- 영재교육원 컨설팅 - 영재교육 유공자 표창 신청	- 영재학급 컨설팅 - 영재교육 유공자 표창 신청
11월	2026.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계획 수립 - 영재성 검사도구 배부	2026.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계획 수립 - 영재성 검사도구 재구성 - 영재교육 기초·심화과정 연수(경상국립대, 경남대) 신청 -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계획	- 영재교육 기초·심화과정 연수(경상국립대, 경남대) 신청 -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계획
12월	- 핵심역량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 영재교육 유공자 표창 - 영재교육연구회 결과 취합	-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 영재교육원 이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2026.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영재교육 유공자 표창 신청 - 영재교육 담당교원 승진가산점 신청 - 영재성발달기록부 입력 완료	- 영재학급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 영재성발달기록부 입력 완료
1월	- 영재교육원 자체평가 및 컨설팅 - 영재교육원 자체평가 및 컨설팅 결과 보고	2026 영재교육원 운영(수료) 결과 보고 제출 2026 영재교육원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2026. 영재교육원 운영비(공모사업 포함) 정산서 제출 2026. 영재교육원 폐지 신청	2026. 영재학급 운영(수료) 결과 보고 제출 2026. 영재학급 운영비(공모사업 포함) 정산서 제출 2026. 영재학급 폐지신청
2월	-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실시 -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결과 취합	2026. 영재교육원 학생, 강사 선발 결과 보고 - 영재성발달기록부 입력 확인	영재성발달기록부 입력 확인